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2019. 8.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9. 8. 7.)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465.3조원, 총지출 434.1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1.2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0.6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각각 7.1조원, 7.9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경기조정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절한 운용 방향 및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을 지원하고자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9건의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4대 공적연금, 일자리사업, 미세먼지 대응사업 등 34건의 주요 재정 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부처 소관 개별 사업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집행결과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수록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결산서를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성인지 결산서의 실효성과 제도개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종 후

차 례

CONTENTS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Ⅰ. 결산 개요 / 3

1. 현 황 ····· 3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6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7

Ⅱ. 개별 사업 분석 / 8

1.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 필요 ····· 8

[대통령경호처]

Ⅰ. 결산 개요 / 13

1. 현 황 ····· 13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7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8

CONTENTS

Ⅱ. 개별 사업 분석 / 19

1. 경호안전교육원 연구용역 사업 체계적 수행 필요 ····· 19

[국회]

Ⅰ. 결산 개요 / 25

1. 현 황 ····· 25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30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31

Ⅱ. 개별 사업 분석 / 32

1. 국회미래연구원 사업의 문제점 ····· 32
2. 국회방송 장애인 시청지원 사업 불용과다 개선 필요 ····· 39

[국가인권위원회]

Ⅰ. 결산 개요 / 45

1. 현 황 ····· 45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49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50

CONTENTS

Ⅱ. 개별 사업 분석 / 51

1. 상담·조사실 흡음시설 예산 조정 부적절 ····· 51
2. 상담서비스 전문성 제고 노력 필요 ····· 54
3.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개선 필요 ····· 57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Ⅰ. 결산 개요 / 65

1. 현 황 ····· 65
2.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72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74

Ⅱ. 주요 현안 분석 / 75

1. 교정시설 운용상의 문제점 ····· 75
   1-1. 과밀수용 완화 방안 마련 필요 ····· 75
   1-2. 교정시설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전용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78
2. 맞춤형 일자리 관련 예비비 배정 · 집행의 문제점 ····· 81
   2-1.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예비비 배정 부적절 ····· 81
   2-2.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검찰청시설운영 사업의 예비비 배정 · 집행 ····· 85

CONTENTS

Ⅲ. 개별 사업 분석 / 87

1.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연례적 예비비 배정 부적절 ····· 87
2.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91
3. 영상녹화조사실의 활용도 제고 필요 ····· 95
4. 벌금 및 과료 사업의 수납률 저조 ····· 98
5.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성과 목표 달성 미흡 ····· 100
6. 특정범죄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 104

※. 법무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 107

[법제처]

Ⅰ. 결산 개요 / 111

1. 현 황 ····· 111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15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16

Ⅱ. 개별 사업 분석 / 117

1. 국민법제관 제도 활성화 필요 ····· 117
2.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의 철저한 계획 수립 필요 ····· 120

CONTENTS

[감사원]

Ⅰ. 결산 개요 / 125

1. 현 황 ····· 125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29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30

Ⅱ. 개별 사업 분석 / 131

1. 감사권익보호관 제도 활성화 노력 필요 등 ····· 131
2.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 노력 필요 등 ····· 135

[대법원]

Ⅰ. 결산 개요 / 141

1. 현 황 ····· 141
2.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48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50

Ⅱ. 개별 사업 분석 / 151

1.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적정 규모 세입예산 편성 필요 ····· 151
2. 법원정책연구비 연구과제의 적정한 선정 등 정책연구용역 사업 추진방식 개선 필요 ····· 154
3. 등기소 신증축 사업 간 사업비 상호 전용 등 부적절 ····· 158

CONTENTS

4.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조정 및 집행 부적절 ····· 162
5. 등특 기본경비 반복적인 운영비 조정 및 일반수용비 초과집행 부적절 ····· 165
6.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강구 필요 ····· 168

[헌법재판소]

Ⅰ. 결산 개요 / 175

1. 현 황 ····· 175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79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80

Ⅱ. 개별 사업 분석 / 181

1. 국제회의 참석 사업 사전검토 미흡에 따른 집행실적 부진 부적절 ····· 181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900만원이며, 4억 1,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2018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79	79	79	410	410	0	0	100.0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18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98억 6,800만원이며, 이 중 95.9%인 862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36억 6,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9,868	89,868	89,868	86,201	0	3,667	95.9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나.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자산은 4,123억 2,600만원, 부채는 8억 7,500만원, 순자산은 4,114억 5,0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3,800만원, 일반유형자산 4,083억 3,800만원, 무형자산 28억 7,9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10억 7,1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3억 8,300만원(0.3%) 증가하였다. 이는 감가상각 등으로 인한 일반유형자산 5억 1,400만원 감소, 소프트웨어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한 무형자산 20억 7,3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4,400만원, 장기충당부채 8억 3,1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6,400만원(7.9%) 증가하였다. 이는 선수임대료 수익 등 유동부채 3,6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412,326	410,943	1,383	0.3
Ⅰ. 유동자산	38	600	△562	△93.7
Ⅱ. 일반유형자산	408,338	408,852	△514	△0.1
Ⅲ. 무형자산	2,879	806	2,073	257.2
Ⅳ. 기타비유동자산	1,071	686	385	56.1
부 채	875	811	64	7.9
Ⅰ. 유동부채	44	8	36	450.0
Ⅱ. 장기충당부채	831	803	28	3.5
순 자 산	411,450	410,132	1,319	0.3
Ⅰ. 기본순자산	323,523	323,523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35,856	37,185	△1,329	△3.7
Ⅲ. 순자산 조정	123,783	123,794	△11	0.0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2018년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97억 6,600만원(11.8%) 증가한 925억 9,800만원으로 프로그램 순원가 930억 2,100만원, 비배분비용 2억 5,000만원, 비배분수익 6억 7,3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순원가는 전기 대비 97억 4,400만원 증가하였고, 비배분비용은 전기 대비 2억 4,100만원 증가하였으며, 비배분수익은 전기 대비 2억 1,800만원 증가하였다.

[2018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93,021	83,277	9,744	11.7
가. 프로그램 총원가	93,021	83,277	9,744	11.7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0
Ⅱ. 관리운영비	0	0	0	0.0
Ⅲ. 비배분비용	250	9	241	2,677.8
Ⅳ. 비배분수익	673	455	218	47.9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92,598	82,832	9,766	11.8
Ⅵ.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92,598	82,832	9,766	11.8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2018년도 기말순자산은 4,114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1,900만원(0.3%) 증가하였는데, 기초순자산 4,101억 3,200만원에서 재정운영결과로 인해 925억 9,800만원 감소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으로 인해 939억 2,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조정항목에서 1,1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8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410,132	412,819	△2,687	△0.7
Ⅱ. 재정운영결과	92,598	82,832	9,766	11.8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93,927	80,156	13,771	17.2
Ⅳ. 조정항목	△11	△11	0	0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411,451	410,132	1,319	0.3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는 ① 국정평가관리,[1] ② 정보화 추진 등이 있다. 국정평가관리 사업은 적정규모 편성 등을 이유로 영상제작 기자재 예산이 6억 7,000만원 감액(21억 6,000만원→14억 9,000만원)되었고, 정책과제 연구용역 예산이 1억원 감액(4억원→3억원)되었다. 정보화 사업은 국민소통플랫폼 인프라 구축사업[2]이 국정평가관리사업으로 이관되어 예산액 전액인 4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으로는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이 있다.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은 청와대 경내·외 노후 시설물 안전 보강 등을 위해 10억 1,000만원 증액(37억 7,000만원→47억 8,000만원) 되었다.

1) 2019년부터 세부사업명이 국정운영관리로 변경

2) 정보화 추진에서 4억 1,000만원 감액되고, 국정평가관리 사업에서 4억 1,000만원 증액된 증감액 연계 사업이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5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그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보좌하는 한편,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 보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2018년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는 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조직구성원의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교육지원모델을 확충하는 등 동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 필요

가. 현 황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1]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직무역량 및 소양 강화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현액은 2억 5,600만원이며, 1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8,7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8회계연도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8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56	256	0	0	256	169	0	87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나. 분석의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조직구성원의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교육 지원모델을 확충하는 등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행정능력개발 교육비 등 일반수용비 2억 200만원, 사이버교육원 운영을 위한 일반용역비 2,500만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131-304

원, 관서업무추진비 2,900만원 등 총 2억 5,600만원으로, 1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8,7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

[2018회계연도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수용비	행정능력개발 교육비, 워크숍비, 강사료 등	201.8	124	0	77.8
일반용역비	사이버교육원 운영	25	22	0	3
관서업무추진비	관서업무추진비	29	23	0	6
합계		255.8	169	0	86.8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및 소양 강화 목적의 「상춘포럼」,[2] 청렴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 직무교육, 신규임용자 대상 복무 및 보안교육, 비서관실 단위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으나, 2018년도는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정부 출범 2년차로서 각 비서관실별 업무 현안이 매우 많았고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외교·안보 상황이 긴박하였으며,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 행사 및 각종 재난·재해 대응 등으로 인하여 관련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기관업무 특성에 비추어 볼 때, 2018년도와 같은 제한적인 집행여건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도 반복될 개연성이 있는 바, 조직구성원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교육지원모델을 확충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대통령비서실은 「상춘포럼」은 소속 직원 대상 브라운백 미팅 형식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강연을 듣거나 소통하면서 다양한 지식·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을 통하여 업무효율화를 위한 부서맞춤형 교육, 직원연구(학습)모임 지원, 독서지원프로그램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참여식 교육과정 운영, 우수 제안자 포상제도를 비롯한 업무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등 각 부처의 사정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전문기관을 통한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 등 보다 유연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도입·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통령경호처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억 2,500만원이며, 2억 1,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다.

[2018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25	125	125	211	211	0	0	100.0
합계	125	125	125	211	211	0	0	100.0

자료: 대통령경호처

2018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09억 2,600만원(전년도 이월액 14억 4,100만원 포함)이며, 이 중 87.6%인 797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0억 9,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9,485	89,485	90,926	79,702	127	11,097	87.6

자료: 대통령경호처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나.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대통령경호처 자산은 4,782억 9,400만원, 부채는 200만원으로 순자산은 4,782억 9,2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300만원, 투자자산 4억 3,300만원, 일반유형자산 4,746억 9,900만원, 무형자산 30억 9,600백만원, 기타비유동자산 4,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9억 4,700만원(0.41%) 감소하였다. 이는 선급비용 발생으로 인한 유동자산 1억 4,500만원 감소, 일반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감가상각으로 인한 감소 등 19억 4,700만원 감소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100만원(84.62%) 감소하였다. 이는 선수수익 기간 안분으로 인해 전기 대비 1,100만원 감소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478,294	480,241	△1,947	△0.41
Ⅰ. 유동자산	23	168	△145	△86.31
Ⅱ. 투자자산	433	433	0	0.0
Ⅲ. 일반유형자산	474,699	476,833	△2,134	△0.45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3,096	2,764	332	△12.01
Ⅵ. 기타비유동자산	43	43	0	0.0
부 채	2	13	△11	△84,62
Ⅰ. 유동부채	2	13	△11	△84,62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0
Ⅲ. 장기충당부채	0	0	0	0.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0
순 자 산	478,292	480,228	△1,936	△0.40
Ⅰ. 기본순자산	311,683	311,683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5,333	△13,708	△1,625	△11.85
Ⅲ. 순자산 조정	181,942	182,252	△310	△0.17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는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876억 7,0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878억 5,600만원, 비배분비용 3,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2억 1,8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4억 9,600만원(1.74%) 증가한 876억 7,000만원이며, 이는 유형자산 자산재평가 및 사용료 수익 등으로 인해 비배분수익이 전년도 대비 39억 8,6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2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대통령경호처 운영프로그램(576억 5,800만원)과 대통령 및 국가요인 경호프로그램(301억 9,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비배분비용은 기타비용 3,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87,856	89,131	△1,275	△1.43
가. 프로그램 총원가	87,856	89,131	△1,275	△1.43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0
Ⅱ. 관리운영비	0	0	0	0.0
Ⅲ. 비배분비용	32	1,247	△1,215	△97.4
Ⅳ. 비배분수익	218	4,204	△3,986	△94.8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87,670	86,174	1,496	1.74
Ⅵ.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87,670	86,174	1,496	1.74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4,802억 2,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4,782억 9,2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9억 3,600만원(0.4%)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

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876억 7,000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3억 1,1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860억 4,500만원 감소하여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과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862억 5,2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2억 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3억 1,1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480,228	472,699	7,529	1.59
Ⅱ. 재정운영결과	87,670	86,174	1,496	1.74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86,045	94,417	△8,372	△8.87
Ⅳ. 조정항목	△311	△713	402	△56.38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478,292	480,228	△1,936	△0.40

자료: 대통령경호처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대통령경호처의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이나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사항은 없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대통령경호처는 미래 경호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미래위협 전담부서 신설 및 첨단 경호장비 도입 등 경호·경비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18년도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경호안전교육원 연구용역 사업은 당초 계획한 통합 교육관리프로그램 구축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연구과제를 연도말에 임박하여 1개월 미만의 연구기간을 거쳐 수행하는 등 예산 집행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향후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호안전교육원 연구용역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경호안전교육원 연구용역 사업 체계적 수행 필요

가. 현 황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1]은 경호안전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경호임무 수행능력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현액은 21억 3,500만원이며, 16억6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2,9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8회계연도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 결산(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8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2,135	2,135	0	0	2,135	1,606	0	529
운영비(210)	1,349	1,349	0	0	1,349	1,140	0	209
연구용역비(260)	188	188	0	0	188	54	0	134
건설비(420)	16	16	0	0	16	16	0	0
유형자산(430)	582	582	0	0	582	396	0	186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분석의견

경호안전교육원 연구용역 사업은 당초 계획한 통합 교육관리프로그램 구축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연구과제를 연도말에 임박하여 1개월 미만의 연구기간을 거쳐 수행하는 등 예산 집행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향후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231-304

2018년도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 연구용역비(일반연구비: 260-01) 예산은 교육체계 개발 6,000만원,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7,000만원, 201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스마트 교육훈련시스템 개발 및 도입 사업의 전산용역(단위시스템 연동 및 시험 테스트) 5,800만원 등 1억 8,800만원이다.

대통령경호처는 동 예산을 활용하여 '3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모의과제 개발' 등 3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연구용역비 집행액은 5,400만원이다.

[2018회계연도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 연구용역 수행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기간	제출일	수행기관	계약방식
3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모의 과제 개발	15	15	0	'18.11.29.~ '18.12.18.	'18.12.26.	㈜ 000	수의
지능형 전자비표 경호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20	20	0	'18.11.28.~ '18.12.27	'18.12.21.	000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첨단드론 기술의 경호활동 방안에 관한 기획 연구	19	19	0	'18.11.28.~ '18.12.27	'18.12.21.	000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계	54	54	0	-	-	-	-

자료: 대통령경호처

2018년도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대통령경호처는 동 연구용역비를 통하여 기관의 인력운영이나 경호안전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연구과제를 일부 수행한 반면, 당초 계획하였던 교육체계 개발,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스마트 교육훈련시스템 도입 및 구축 사업의 단위시스템 연동 및 시험테스트를 위한 전산용역 수행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예산현액 1억 8,800만원의 28.7%에 불과한 5,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4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

다음으로, 2018년도에 수행한 3개 연구과제의 계약 방식과 기간을 살펴보면, 모두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 계약액 2,0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추진되었고, 연도

말인 2018.11월말에 시작되어 1개월 미만의 연구기간을 거쳐 수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 수행은 연구과제 선정의 적정성과 결과물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기존 교육훈련시스템과 연동시켜 기관특성에 맞는 통합 교육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교육훈련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협의 단계에서 업체 측의 과도한 기술지원비 요구가 있었고 프로그램 개발에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연내 도입을 위하여 기성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함에 따라 전산용역과 교육컨텐츠 개발 연구용역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으며, 미래대응부서의 미래위협 관련 긴급한 연구용역 소요가 제기되어 연말에 집행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2018년도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통합 교육관리프로그램 구축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나 기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던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호안전교육원 연구용역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8회계연도 국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액 대비 8억 6,200만원(36.7%)이 증가한 32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7억 7,500만원(31.8%)이 감소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수입	2,436	2,349	2,349	3,211	862	775

자료: 국회

2018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액 대비 436억 9,100만원(7.2%)이 감소한 5,614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14억 6,300만원(2.1%)이 증가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지출	550,007	605,161	605,161	561,470	△43,691	11,463

자료: 국회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788-4640)

나.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3억 4,900만원이며, 35억 2,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1.0%인 32억 1,100만원을 수납하고 3억 1,7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없다.

[2018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349	2,349	2,349	3,528	3,211	317	0	91.0

자료: 국회

2018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120억 1,200만원이며, 이 중 91.7%인 5,614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78억 4,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26억 9,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05,161	605,161	612,012	561,470	7,845	42,697	91.7

자료: 국회

다.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국회의 자산은 3조 4,479억 8,300만원, 부채는 260억 5,300만원으로 순자산은 3조 4,219억 3,0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2억 7,000만원, 일반유형자산 3조 4,236억 2,300만원, 무형자산 220억 1,6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7,4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80억

22만원(0.2%) 증가하였다. 이는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의 증가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46억 1,600만원 증가, 외부소프트웨어의 구입과 시스템 구축 등 내부개발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 증가에 따른 무형자산 38억 9,2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93억 300만원, 장기차입부채 140억 5,500만원, 장기충당부채 6억 5,8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20억 3,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5억 9,900만원(16.0%)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차입금의 증가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34억 3,800만원 증가,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6억 4,6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국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3,447,983	3,439,961	8,022	0.2
Ⅰ. 유동자산	2,270	2,580	△310	△12.0
Ⅱ. 일반유형자산	3,423,623	3,419,007	4,616	0.1
Ⅲ. 무형자산	22,016	18,124	3,892	21.5
Ⅳ. 기타비유동자산	74	249	△175	△70.3
부 채	26,053	22,454	3,599	16.0
Ⅰ. 유동부채	9,303	9,107	196	2.2
Ⅱ. 장기차입부채	14,055	10,617	3,438	32.4
Ⅲ. 장기충당부채	658	12	646	5383.3
Ⅳ. 기타비유동부채	2,037	2,718	△681	△25.1
순 자 산	3,421,930	3,417,508	4,422	0.1

자료: 국회

국회는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6,211억 1,5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2,055억 8,000만원, 관리운영비 4,183억 7,100만원, 비배분비용 6,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28억 9,6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94억 1,400만원(3.2%) 증가한 6,211억 1,5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등의 증가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33억 9,400백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프로그램순원가는 의정지원활동(874억 8,400만원), 국회사무처운영(932억), 국회도서관운영 (177억 3,300만원), 예산정책처운영(39억 5,600만원), 입법조사처운영(32억 700만원)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512억 6,100만원과 경비 671억 1,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700만원, 기타비용 5,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6억 6,600만원, 자산처분이익 7백만원, 기타수익 12억 2,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국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	205,580	208,653	△3,073	△1.5
Ⅱ. 관리운영비	418,371	394,977	23,394	5.9
Ⅲ. 비배분비용	60	999	△939	△94.0
Ⅳ. 비배분수익	2,896	2,927	△31	△1.1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621,115	601,701	19,414	3.2
Ⅵ. 비교환수익 등	0	0	0	0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621,115	601,701	19,414	3.2

자료: 국회

국회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3조 4,175억 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조 4,219억 3,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44억 2,200만원(0.1%)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초순자산이 전기 대비 1,682억 7,300만원 증가하였고,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194억 1,4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기 대비 237억 1,900만원 증가, 조정항목은 전기 대비 1,681억 5,600만원 감소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6,290억 7,4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32억 1,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3억 2,6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국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3,417,508	3,249,235	168,273	5.2
Ⅱ. 재정운영결과	621,115	601,701	19,414	3.2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25,863	602,144	23,719	3.9
Ⅳ. 조정항목	△326	167,830	△168,156	△100.2
Ⅴ.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3,421,930	3,417,508	4,422	0.1

자료: 국회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국회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의회경호및방호, ② 의사국운영** 등이 있다.

의회경호및방호 사업(31억원→26억원)은 오작동 위험성 등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차량강습방지시설 설치 사업예산 5억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의사국운영 사업(18억원→17억원)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감안하여 1억원이 감액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전자도서관 운영**이 있다.

전자도서관 운영 사업(97억→100억)은 클라우드 기반 학술정보 융합데이터 지식서비스 활성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3억원이 증액되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국회는 ①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환경 조성, ② 의회주의를 실현하는 책임국회 정립, ③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민생국회 구현, ④ 국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국회 실현, ⑤ 국익창출을 위한 의회외교 전개를 2018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국회미래연구원 운영에 있어 연구사업의 위탁비중을 축소하고, 연구사업의 지연과 외부용역 집행관리 상의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국회 방송국은 장애인 시청지원 사업의 불용과다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향후 적정 예산 편성 및 사업내용 다각화 등을 통해 이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국회미래연구원 사업의 문제점

가. 현 황

국회미래연구원 사업[1]은 미래 환경의 예측·분석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을 통해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미래연구원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사업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법」에 근거(2017.12.12. 제정·공포)하여 설립되었으며, 2018년 5월에 개원하였다.

2018년도 국회에서 해당기관에 출연한 예산현액은 39억 1,800만원이며,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이 중 20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6,6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회미래연구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회미래연구원	3,918	3,918	0	3,918	3,918	100	0	0

자료: 국회

[2018회계연도 사업시행주체(피출연기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국회미래연구원	3,918	0	3,918	2,052	1,866	0	52.4

자료: 국회 미래연구원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034-308

나. 분석의견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은 과제 수행방식, 과제관리, 예산집행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연구사업 중 위탁연구개발비(이하 "위탁연구비")의 비중이 연구사업의 직접비 대비 94.8%로서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연은 연구사업 5건을 2018년도 연구과제로 선정하였다. 이 중 '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 사업은 11개 분야(기후변화, 정치·행정 등)별로 나누어 국토연구원,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등 타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과제 2건은 내부인력이 일부 내용을 집필하고 일부는 타 기관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역량 강화사업'은 실태조사와 직업별 미래상에 대한 기획연구는 위탁하고, 기타 내용은 미래연에서 주관한 세미나, 좌담회 등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연구사업비 16억 8,500만원 중 위탁연구개발비 예산이 8억 2,000만원으로, 연구사업비 총 예산액 중 위탁사업비 비중이 48% 이상이며, 직접비 대비 위탁사업비 비중은 94.8%이다.

[2018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사업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과제명	연구비 총예산	위탁비 예산	연구비총예산 대비 위탁비 비율	직접비 대비 위탁비 비율
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	639	485	75.8	314.0
국민선호미래 연구	200	50	25.0	33.4
미래결정정책 연구	159	0	0	0
북한 및 통일 한반도의 미래연구	260	100	38.5	62.5
연구역량 강화사업	427	185	43.3	76.4
합 계	1,685	820	48.7	94.8

자료: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8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사업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과제명	총 연구비 집행액	위탁비 집행액	연구비 집행액 대비 위탁비 비율	직접비 대비 위탁비 비율
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	548	485	88.5	769.8
국민선호미래 연구	100	50	50	100
미래결정정책 연구	68	0	0	0
북한 및 통일 한반도의 미래연구	93	65	69.9	232.1
연구역량 강화사업	201	85	42.3	73.3
합 계	1,010	795	89.7	369.8

자료: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8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사업 착수지연 및 집행부진 등으로 인해 총 사업예산 중 일부인 10억 1,000만원만 집행되었기 때문에, 집행액 대비 미래연의 위탁연구비는 총 예산의 89.7%에 달하며, 직접비 대비 비율은 369.8%이다.

위탁연구의 적정 비중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나,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최상위 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비해 볼 때 과다한 측면이 있다. 동 규정은 위탁연구비는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2]고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미래연은 최대 3억 4,600만원 이내로 위탁비를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나, 7억 9,500만원으로 이를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 2018년도의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면 해당 규정 적용 시 상한액의 924% 수준이다.

미래연은 이에 대해 국가미래전략연구의 플랫폼 역할에 중점을 두고 설립되었으며, 연구 관리기관으로서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⑤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의하면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인 '위탁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예산편성 당시 인건비 산정 근거로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높은 연구역량을 가진 연구진 유입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준의 보수를 책정할 필요’를 역설하였다. 실제 2018년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직 평균 보수액이 7,500만원 수준인데 반해 미래연 박사급 연구직 평균 임금은 9,427만원으로 작지 않은 수준이다.

[2018년도 주요 연구기관과의 연구인력 평균 급여 비교]

직급	KD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20,000	-	-
연구위원	97,000	(전문위원)	105,800
부연구위원	83,000	51,670	82,740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공시 및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출연 사업의 목적도 ‘소속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미래 환경변화 분석 및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을 통해 국회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임을 명시하고 있다. 전문 연구기관의 핵심사업 5개 중 1개 사업만 내부 인력에 의한 단독연구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총 연구비 집행액의 89.7%가 위탁연구비로 집행된 것은 이러한 기관 설립목적과 조직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미래연은 향후 과도한 위탁연구비의 비중을 축소하고 내부 연구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탁과제의 최종보고서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용역비를 전액 지급한 것은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판단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 15조에 근거하여 위탁연구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납품받고 검수완료 후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3] 그러나 미래연에서는 2018년도 위탁과제 15건 중 13건의 과제에 대해 최종보고서가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였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도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2018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위탁연구과제 관련 집행 내역]

연구사업명	위탁과제명	연구기간(계약)	보고서제출일	잔금지급일
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	11개 분야 용역과제 (기후변화/STI/에너지·자원/식량·수자원/국제정치/사람/북한/경제/정주여건)	’18.10.10-’18.12.15	’19.01.31	’18.12.27
국민선호미래 연구	한국인의 미래 선호 가치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18.11.01-’18.12.31	’19.01.31	’18.12.31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조사	’18.11.12-’18.12.31	’19.01.25	’18.12.31
북한 및 통일 한반도의 미래 연구	통일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18.09.01-’18.12.31	’18.12.28	’18.12.31
연구역량 강화 사업	한국 삶의 질 패널 구축기반 연구	’18.09.01-’18.12.31	’18.12.31	’18.12.31

자료: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사업에서 발주한 11개 위탁연구의 경우 11개 보고서 모두 제출일이 2019년 1월 31일이나 잔금지급은 2018년 12월 27일에 집행되었다. ‘국민선호미래 연구’의 위탁과제 역시 보고서제출 한 달여 전에 이미 잔금을 지급하였다. 특히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조사’의 경우 실제 조사기간이 ‘2019.01.18.-2019.01.22.’ 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2018년 12월 31일에 위탁연구비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 삶의 질 패널 구축기반 연구’는 보고서 제출일과 잔금지급일이 동일 날짜에 이루어졌으나, 현실적으로 최종보고서가 납품된 후 보고서 검수에 시간이 걸리고, 이것이 완료되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잔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생각해보면 이 또한 적정한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종결과물이 납품되기 이전에 용역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에 근거할 때 부적절한 집행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핵심 연구사업 집행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바, 사업성과 제고와 연구기간 관리를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의 5개 핵심과제 가운데 2018년에 완료한 과제는 한 건도 없으며, 모든 과제의 최종보고서가 2019년 5월 24일에 동시 발간되었다. 이와 같이 연구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 기인하여, 미래연은 연구사업비 16억 8,500만원 중 10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7,600만원은 이월하였다. 미래연은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 연구원 개원이 2018년 5월에 이루어졌고, 연구계획서 승인이 지연(8월)되는 등의 상황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하였다. 국회는 해당 기관이 개원 첫해 기관운영 기초 정비를 마친 만큼 2019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구원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계획수립 당시 개시일을 감안한 상태에서 2018년 12월 말을 사업종료일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제에 대해 2019년 상반기까지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성과관리가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8년 연구과제 진행이 2019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2019년 사업인 8개 연구과제의 수행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연은 2019년에 연구직접비 27억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황으로 신규 사업의 연내 집행 및 성과 도출 가능성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업 수행은 매년 연쇄적인 실집행률 및 성과 저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2018년 집행률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18억 7,000만원을 전액 이월한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인건비 잔액의 이월은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래연은 2018년도 집행잔액 18억 6,600만원(인건비 6억 600만원, 경상경비 8,300만원, 시설구축운영비 5억 200만원, 연구사업비 6억 7,500만원) 전액을 이월하였다. 미래연 측은 집행 잔액을 이월하여 인력 충원 및 해당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8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이월 내역 및 차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교부액	이월액	2019년 예산액
국회미래연구원	3,918	1,866	5,021
기관운영출연금	2,233	1,191	2,228
사업출연금	1,685	675	2,793

자료: 국회

그러나 2018년도 집행률이 54.6%로 저조한 데 기인하여 발생한 18억 7,000만원을 전액 이월함으로써 2019년도 예산현액은 68억 9,100만원이다. 이월규모로 볼 때 전년도 이월사업과 당해 연도 사업을 동시에 집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2019년 박사급 연구인력 충원이 6월에야 이루어졌고, 전년도 연구과제 집행 지연으로 인해 당해연도 연구과제 역시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월액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현액의 집행 가능성 역시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또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의하면 인력 미충원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은 기존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 연구개발적립금, 성과급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무부처는 마지막 분기 또는 월에 예상되는 집행잔액만큼 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해당 출연금을 전액 교부하여 집행 잔액에 대한 재정적 조치가 제한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2018년 집행잔액과 2019년 인건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2019년도에 해당 예산액만큼 미교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미래연은 사업계획이나 추진일정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계상하고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출연기관의 과다 이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 가능성을 전제로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

2 국회방송 장애인 시청지원 사업 불용과다 개선 필요

가. 현 황

국회방송 운영[1]은 국회의 입법 활동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국회 본회의·상임위 등 주요 회의 의사중계방송, 의정활동 관련 특화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 제작(직접제작, 외주제작) 및 구입, 방송시스템 임차, 외주제작, 장애인 시청지원 등의 세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방송 운영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134억 7,100만원 중 124억 9,600만원이 집행되고 9억 7,600만원이 불용되었다. 이 중 장애인 시청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64.3%로 예산현액 13억 8,200만원에서 8억 8,9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9,300만원을 불용되었다.

[2018회계연도 국회방송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회방송운영	13,363	13,363	±178	13,471	12,496	93.5	0	976
장애인 시청지원	1,382	1,382	0	1,382	889	64.3	0	493

자료: 국회

나. 분석의견

국회 방송국은 장애인 시청지원 사업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시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적정 예산 편성 및 화면해설방송 추진 등을 통해 이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036-300

국회방송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2]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장애인 시청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주요 프로그램에 자막 및 수어방송 서비스를 실시[3]하고 있으며, 국회방송이 법령 상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4] 화면해설방송 외에는 고시의무사업자에 적용되는 규정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국회방송의 장애인 방송비율은 연간 총 방송시간(525,600분) 대비 자막방송 90.5%(226,077분), 수어방송 3%(14,554분)이다.

[자막 및 수어방송 규정 및 현황]

(단위: %)

장애인방송 유형	'18년도 총 방송시간 대비 장애인 방송시간 비율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규정	국회방송 현황	
자막방송	70%	2016	79
		2017	87.4
		2018	90.5
화면해설방송	10%	2016	0
		2017	0
		2018	0
한국수어방송	3%	2016	3
		2017	3
		2018	3

자료: 국회

2)「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③「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자막방송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 국정감사 등 의사중계 프로그램 내용을 자막처리하는 서비스로 2009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국수어방송은 개국 당시인 2004년 5월부터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수화로 전달하는 서비스로서, 국가적 주요행사와 본회의 중 대정부 질문, 대통령 시정연설, 교섭단체 대표연설, 뉴스를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4)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필수지정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고시의무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해야 한다. 해당 비율은 사업자 별로 상이하다. 국회방송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나 경영규모 등을 이유로 고시의무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결산 내역을 보면, 2018년도 장애인 시청지원 예산 13억 8,200만원 중 8억 8,900만원을 집행(64.3%)하고 4억 9,300만원을 불용했다. 지난 3년 간 예산액은 동일하게 13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실적이 2016년 74.9%, 2017년 68.8%, 2018년 64.3%에 불과하여 지속적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 장애인 시청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2014년	891	788	103	88.4
2015년	1,198	1,049	149	87.6
2016년	1,382	1,035	347	74.9
2017년	1,382	951	431	68.8
2018년	1,382	889	493	64.3

자료: 국회

국회방송 측은 이에 대해 동 사업은 전액 일반용역비를 통해 집행되는데,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낙찰차액에 의한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3년 자막·수화방송 관련 용역 입찰금액과 낙찰금액 비교]

(단위: 원)

	구분	방송시간	입찰금액	낙찰금액
2016	자막방송	375,381분	2,700/1분	생방송 2,798/1분
				재방송 2,238/1분
	수화방송	13,900분	5,500원/1분	4,823원/1분
2017	자막방송	457,266분	2,700/1분	생방송 2,300/1분
				재방송 1,610/1분
	수화방송	17,090분	5,500원/1분	4,304원/1분
2018	자막방송	475,211분	2,700/1분	생방송 2,176/1분
				재방송 1,523/1분
	수화방송	17,090분	5,500원/1분	4,480원/1분

자료: 국회

지난 3년 간 반복적으로 예산액의 30%를 상회하는 수준의 불용액이 낙찰차액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당해연도 사업계획 시 이를 반영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집행률이 64.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 역시 전년과 동일규모로 편성되었다.

국회방송국은 사업계획 시 적정수요에 근거하여 비용을 계상하고, 기존 장애인 시청지원 서비스 확대 및 신규서비스(화면해설방송 등) 추진을 통해 불용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8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1,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500만원(27.8%)이 감소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수입	18	17	17	13	△4	△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8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총지출은 300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5억 5,400만원(5.9%)이 증가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지출	28,531	31,412	31,412	30,085	△1,327	1,554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788-4640)

나.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700만원이며, 1,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00만원을 수납하고 1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7	17	17	14	13	1	0	76.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8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17억 6,700만원이며, 이 중 94.7%인 300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7,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1,0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8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1,412	31,412	31,767	30,085	272	1,410	94.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다.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산은 60억 900만원, 부채는 0원으로 순자산은 60억 9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4억 6,100만원(8.3%)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400만원, 일반유형자산 23억 2,400만원, 무형자산 13억 4,5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23억 3,6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지역인권사무소 관사 취득 및 기타 일반유형자산 취득으로 인한 일반유형자산 6억 7,600만원 증가와, 무형자산 감가상각으로 인한 2억 1,5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6,009	5,548	461	8.3
Ⅰ. 유동자산	4	6	△2	△33.3
Ⅱ. 투자자산	0	0	0	0
Ⅲ. 일반유형자산	2,324	1,648	676	41.0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1,345	1,560	△215	△13.8
Ⅵ. 기타비유동자산	2,336	2,334	2	0.1
부 채	0	0	0	0
Ⅰ. 유동부채	0	0	0	0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
Ⅲ. 장기충당부채	0	0	0	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6,009	5,548	461	8.3
Ⅰ. 기본순자산	5,748	5,748	0	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32	△593	461	77.7
Ⅲ. 순자산 조정	392	392	0	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18억 3,6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318억 3,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8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1억 2,300만원(7.1%) 증가한 318억 2,8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순원가 21억 2,200만원 증가 및 비배분수익 1억원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1,836	29,714	2,122	7.1
가. 프로그램 총원가	31,836	29,714	2,122	7.1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
Ⅱ. 관리운영비	0	0	0	0
Ⅲ. 비배분비용	0	0	0	0
Ⅳ. 비배분수익	8	9	△1	△11.1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31,828	29,705	2,123	7.1
Ⅵ. 비교환수익 등	0	0	0	0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31,828	29,705	2,123	7.1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55억 4,7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60억 900만원으로 기초 대비 4억 6,200만원(8.3%)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21억 2,3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18억 6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323억 2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2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5,547	4,769	778	16.3
Ⅱ. 재정운영결과	31,828	29,705	2,123	7.1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2,289	30,483	1,806	5.9
Ⅳ. 조정항목	-	-	-	-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6,009	5,547	462	8.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지역인권문화 확산 사업 등이 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은 과다 증액된 직책수행경비 880만원이 감액(14.99억원→14.90억원)되었고, 지역인권문화 확산 사업은 강원인권체험관 개관시기를 감안하여 체험관 운영 코디 임금 900만원이 감액(4.85억원→4.76억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 조성,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 등이 있다.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조성 사업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2,000만원이 증액(2.95억원→3.15억원)되었고,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사업은 신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1억 2,000만원이 증액(11.16억원→12.36억원)되었으며,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은 인권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에 8,500만원이 증액(2.24억원→3.09억원)되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 ② 인권의 대중화 및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③ UN, 국가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 국제사회 기여 등에 소요되는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인권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인권 상담의 질적 제고를 위해 편성된 상담·조사실 흡음시설 설치 예산을 전용하여 사무 공간 확장을 위한 공사비 부족분을 충당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둘째, 상담서비스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인권전문상담원의 채용·교육 시스템 개선을 통한 상담 서비스의 질적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UN 및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회의 참석이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 하에 이루어지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상담·조사실 흡음시설 예산 조정 부적절

가. 현 황

기관운영 기본경비[1]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수 인력운영경비 및 기관운영경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관운영 기본경비의 2018년도 예산현액 69억 1,600만원 중 66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700만원을 이월하고 1,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 기본경비	6,587	6,587	289	40	6,916	6,642	96.0	257	17
공사비	40	40	0	290	330	307	93.0	0	23
감리비	0	0	0	5	5	5	100.0	0	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8회계연도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232	232	0	△55	177	167	94.4	0	10
조사상담실 흡음공사	66	66	0	△60	6	6	100	-	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011-250

나. 분석의견

인권 상담의 질적 제고를 위해 편성된 상담·조사실 흡음시설 설치 예산을 전용하여,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무공간 확장 공사비 부족분을 충당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조직개편[2]에 따른 사무공간 확장 및 재배치 공사(감리비 포함)를 위해 3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다. 동 사업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내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타비목 및 사업으로부터 예산 2억 9,500만원을 조정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사무공간 확장 및 재배치 공사 관련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기관운영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430-01)	230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공사비 (420-03)**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공사비 (420-03)**	60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공사비 (420-03)**
기관운영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430-01)	5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감리비 (420-04)

자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조정예산 2억 9,500만원 중 6,000만원은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업에 편성된 조사·상담실 흡음공사[3] 사업비(420-03)이다. 2018년도 예산편성 당시 국가인권

2) 2018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시정국 신설 등 직제개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정원이 205명에서 220명으로 15명 증원되었다.

3) 효과적인 방음을 위해 흡음재를 벽이나 천정에 시공하여 음을 흡수·약화시키는 공사이다. 흡음공사를 통해 조사·상담 내용이 외부로 소리가 나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 내부 울림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 보안 및 상담·조사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예산에 편성했다.

위원회는 흡음공사의 주목적으로 '상담 및 진정 서비스의 개선'을 제시하였으며, 동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내담자 및 출석조사자의 사생활 보호와 상담내용의 보안관리 등을 강조하였다. 예산액 6,600만원은 본청의 12개 상담·조사실 외 각 인권사무소별 설치(총 10개소)를 기준으로 한 산출내역에 근거[4]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예산절감 및 효율적 시공을 위해 조사·상담실 흡음공사와 사무공간 확장 및 재배치 공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별 집행내역 및 공종 공사비 내역서를 보면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업에 편성된 6,600만원 중 600만원으로 본부의 4개 상담·조사실에 흡음공사를 시행하고, 잔여 6,000만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전용하여 사무 공간 확장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예산 조정에 따라 본청은 12개실 중 4개실만 관련 흡음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지역사무소 상담실 흡음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이 부적절한 예산조정 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국가인권위원회 본청 12개실, 지역 인권사무소 10개소에 각 1개실에 대해 실 당 300만원씩 공사비를 계상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2 상담서비스 전문성 제고 노력 필요

가. 현 황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업[1]은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한 국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은 1억 7,600만원이며 이 중 1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232	232	0	△60	176	166	94.3	0	1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나. 분석의견

2018년 인권전문상담원 상담서비스 이용자의 상담서비스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하였으므로, 상담서비스의 질적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상담·민원서비스 영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 기능인 조사·구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중요한 부문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피해자 등에 대한 전문상담 및 민원처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2018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인권침해 및 차별피해자들의 인식조사 종합점수는 59.5점으로, 전년(70.2점) 대비 10.7점 하락하였다. 특히, 상담서비스의 전문적 역량이 평가되는 문제해결, 전문성 부문은 2년 연속 대기단계, 친절성, 신속성 부문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033-300

[이용자들의 부문별 상담서비스 평가 내역]

(단위: 점/100점)

조사시기	대기단계	친절성	신속성	정확성	설명력	문제해결	전문성	공정성	종합
2018년	63.0	69.4	60.9	**57.3**	65.2	**52.9**	**56.6**	59.8	**59.5**
2017년	73.1	76.9	71.3	**67.9**	73.5	**63.6**	**67.2**	71.6	**70.2**

자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동 기관이 인권문제 상담·구제의 최종적인 보루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고, 2018년에는 상담서비스 평가 수행방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평가가 엄격해진 경향이 나타났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문제 상담·구제 업무는 매년 일정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상담서비스를 평가할 경우 오프라인 평가보다 평가점수가 낮아지는 편의(bias)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권상담서비스는 기본상담 역량 외에 관련 법제 및 규정에 대한 이해와 현안 대응역량, 인권감수성이 동시에 필요한 전문적 영역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점을 감안하여 인권전문상담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대체인력 2인을 포함한 9명의 전문상담원이 연 5만 630여 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어,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전문상담원 중 신규채용된 대체인력은 모두 상담학 전공자이나 인권 분야의 경력은 없어 인권 전문성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들에 대한 당해연도 교육프로그램 수행현황을 보면 인권현안에 관한 교육이 총 6회, 상담역량 교육이 1회에 불과하다.

[2018년 인권전문상담원 집합교육 프로그램]

구분	교육 내역	교육방식	총 시행횟수
현안대응 역량강화 교육	미투 운동 국면에서 성희롱 상담 정신장애인의 이해와 상담 혐오표현과 인권, 표현의 자유 외	강사 초빙하여 회 당 4시간 교육 및 현안토론	6회
상담역량 강화교육	상담 메뉴얼 및 기본역량 강화 교육	내부직원교육	1회

자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인권위원회는 상담접수 건수 추이를 반영한 적정 규모의 인권전문상담원을 운영하고,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상담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개선 필요

가. 현 황

국제교류협력 사업[1]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기본임무를 수행하고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동 사업의 예산현액은 11억 5,600만원이며, 11억 300만원이 집행되고 5,3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8회계연도 국제교류협력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제교류협력	1,156	1,156	0	0	0	1,156	1,103	0	53
국외업무여비	302	302	0	0	0	302	280	0	21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나. 분석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UN 및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국제교류협력 내 국외출장은 '제10차 국제 군옴부즈만기구 회의' 등 총 9건이며, 동 사업의 국외업무여비 집행액은 2억 8,000만원이다.

그런데 '제10차 국제군옴부즈만기구 회의'와 '제13차 세계국가인권기구 대회'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국외업무여비를 집행하였다. 그런데 동 회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036-300

의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온 공식 국제행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4년 이후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참여한 행사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주관기관에서 개최지 선정이 늦어져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연례적인 참석 행사라는 측면에서 참가여부와 인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개최지에 따른 예산과 실집행액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평균적 비용을 추산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연례적으로 참가하던 국제회의 참가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후 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은 면밀한 수요파악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UN 여성지위 위원회', 'APF(아태국가 인권기구 포럼) 사무총장 회의 및 워크숍' 건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당 예산액은 계획에 없던 노르웨이 사례연구를 위한 방문 활동을 위해 집행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인권 관련 주요 국제협의체인 UN 분과위원회 참석계획을 취소하고 사례연구를 위한 국외출장을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2018년도 국제회의 참석 관련 국외업무여비 예산편성과 집행 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

세부 사업명	사업내역	예산편성(각목명세서)		집행	
		출장자	예산액	출장자	집행액
국제 교류 협력	제10차 국제 군옴부즈만기구 회의	-	-	차관급 1명 6급 1명	13.6
	제13차 세계국가인권 기구대회 참가	-	-	차관급 1명 6급 1명	13.4
	UN 여성지위위원회	차관급 1명 5급 1명	17	-	-
	UN인권이사회 (UN고령화실무그룹회의 참가 및 미주인권기구 방문)	차관급 1명 국장급 1명 5급 1명	29.7	장관급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38
	캐나다 인권기구 방문	-	-	장관급 1명 차관급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39.8
	혐오표현 대응 전략 : 노르웨이 사례연구	-	-	5급 2명	5.8

자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이와 같은 예산편성과 집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가령 UN 고령화실무그룹 회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집행되는 반면, APF 사무총장급 회의, APF 워크숍의 경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연례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주요 국제인권기구 국제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 편성 및 집행내역('16-'18)]

(단위: 백만원)

회의명	2016		2017		2018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GANHRI 연례회의	33	49	41	39	48	39
UN고령화실무그룹 회의	0	57	0	49	0	37
APF 연례회의	23	13	19	12	26	10
APF 사무총장급 회의	9	0	9	0	12	미개최
APF 워크숍	6	0	6	0	6	미개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9	0	0	0	16	12
인종차별철폐위원회실무	0	0	16	0	16	6
여성지위위원회	15	22	16	9	17	-
UN 인권이사회	20	0	26	0	30	38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0	0	0	0	0	13.4
국제군옴부즈만 연례회의	0	14.1	0	14.1	0	13.6

자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UN 및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필요가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조 443억 9,700만원이며, 1조 5,194억 1,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8.8%인 1조 5,018억 4,000만원을 수납하고 175억 7,0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8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914,472	1,914,472	1,914,472	1,401,059	1,383,607	17,451	1	98.8
교도작업특별회계	129,925	129,925	129,925	118,352	118,233	119	0	99.9
합계	2,044,397	2,044,397	2,044,397	1,519,411	1,501,840	17,570	1	98.8

자료: 법무부

2018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9,137억 100만원이며, 이 중 96.8%인 3조 7,880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134억 4,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21억 6,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2018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554,610	3,554,610	3,783,776	3,677,870	13,442	92,464	97.2
교도작업특별회계	129,925	129,925	129,925	110,222	0	19,703	84.8
합계	3,684,535	3,684,535	3,913,701	3,788,092	13,442	112,167	96.8

자료: 법무부

나. 기금 결산

2018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011억 4,500만원이며, 961억 8,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3%인 955억 6,300만원을 수납하고 6억 2,5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8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1,145	101,145	101,145	96,189	95,563	625	0	99.3

자료: 법무부

2018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1,011억 4,500만원이며, 이 중 94.5%인 955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8,300만원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1,145	101,145	101,145	95,563	0	383	94.5

자료: 법무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8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5,481억 3,900만원(25.5%)이 감소한 1조 5,974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069억 1,700만원(6.3%)이 감소하였다.

[2018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603,113	2,044,397	2,044,397	1,501,840	△542,557	△101,273
기금	101,207	101,145	101,145	95,563	△5,582	△5,644
합계	1,704,320	2,145,542	2,145,542	1,597,403	△548,139	△106,917

자료: 법무부

2018회계연도 법무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215억 1,000만원(3.3%)이 증가한 3조 7,523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426억 1,700만원(4.0%)이 증가하였다.

[2018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3,524,317	3,541,090	3,541,090	3,662,982	121.892	138,665
기금	85,426	89,761	89,761	89,378	△382	3,952
합계	3,609,743	3,630,851	3,630,851	3,752,360	121,510	142,617

자료: 법무부

라.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법무부의 자산은 10조 310억 2,800만원, 부채는 1,866억 9,000만원으로 순자산은 9조 8,443억 3,8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221억 7,500만원, 투자자산 150억원, 일반유형자산 9조 7,937억 6,800만원, 무형자산 618억 3,4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4,384억 2,700만원(4.6%) 증가하였다. 이는 국유재산 재평가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4,305억 9,500만원 증가, 교도작업특별회계 여유자금 중 공자기금 장기예탁금 증가 등에 따른 투자자산 30억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297억 7,900만원, 장기충당부채 1,260억 8,000만원, 장기차입부채 308억 3,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857억 3,100만원(31.5%) 감소하였다. 이는 소송충당부채 감소 등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246억 5,600만원 감소, 국가배상금 미지급금 감소 등에 따른 유동부채 671억 5,0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법무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0,031,028	9,592,601	438,427	4.6
Ⅰ. 유동자산	122,175	123,132	△957	△0.8
Ⅱ. 투자자산	15,000	12,000	3,000	25.0
Ⅲ. 일반유형자산	9,793,768	9,363,173	430,595	4.6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61,834	58,464	3,370	5.8
Ⅵ. 기타비유동자산	38,251	35,832	2,419	6.8
부 채	186,690	272,421	△85,731	△31.5
Ⅰ. 유동부채	29,779	96,929	△67,150	△69.3
Ⅱ. 장기차입부채	30,832	24,756	6,076	24.5
Ⅲ. 장기충당부채	126,080	150,736	△24,656	△16.4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0
순 자 산	9,844,338	9,320,180	524,158	5.6
Ⅰ. 기본순자산	5,685,180	5,685,180	0	0.0
Ⅱ. 적립금 및 잉여금	940,277	504,664	435,613	86.3
Ⅲ. 순자산 조정	3,218,880	3,130,336	88,544	2.8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조 6,866억 7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조 7,533억 6,800만원, 관리운영비 2조 6,505억 9,800만원, 비배분비용 469억 1,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667억 6,100만원, 비배분수익 3,686억 2,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676억 5,800만원(7.1%) 증가한 4조 154억 9,1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3,046억 7,8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9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법무활동 프로그램(7,177억 3,600만원)과 교정활동 프로그램(3,222억 9,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조 1,725억 6,800만원과 경비 4,780억 3,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평가손실 54억 3,500만원과 기타비용 406억 3,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법무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686,607	1,381,929	304,678	22.0
가. 프로그램 총원가	1,753,368	1,448,435	304,933	21.1
나. 프로그램 수익	66,761	66,506	255	0.4
Ⅱ. 관리운영비	2,650,598	2,531,325	119,273	4.7
Ⅲ. 비배분비용	46,911	39,675	7,236	18.2
Ⅳ. 비배분수익	368,624	205,096	163,528	79.7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4,015,491	3,747,833	267,658	7.1
Ⅵ.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4,015,491	3,747,833	267,658	7.1

자료: 법무부

법무부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9조 3,201억 8,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9조 8,443억 3,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5,241억 5,800만원(5.6%)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2,676억 1,000만원 증가하고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899억 3,500만원 감소하였으나,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4,774억 6,3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5조 9,754억 1,4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조 5,243억 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885억 4,4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법무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9,320,180	8,915,893	404,287	4.5
Ⅱ. 재정운영결과	4,015,491	3,747,833	267,658	7.1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451,104	3,973,641	477,463	12.0
Ⅳ. 조정항목	88,544	178,479	△89,935	△50.4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9,844,338	9,320,180	524,158	5.6

자료: 법무부

마. 재정 구조

2018회계연도 법무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801억 1,000만원 전출되었다.

한편 교도작업특별회계는 공자기금에 450억원을 예탁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회수 436억원, 예탁이자수입 13억원을 받았다.

[2018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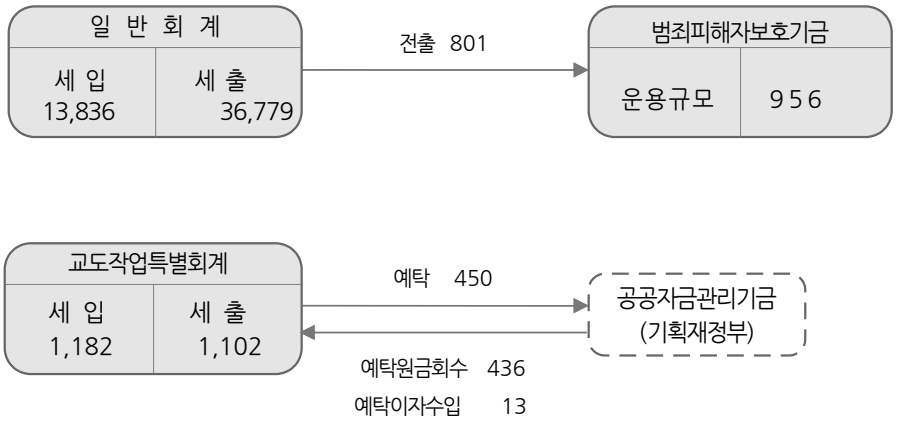

2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법무부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정부법무공단 운영 지원 사업, ②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 ③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사업** 등이 있다.

정부법무공단 운영 지원 사업은 최근 공단이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어 자산 규모가 점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3백만원이 감액(439백만원→416백만원)되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은 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활동비 및 직책수행경비 183백만원이 감액(3,306백만원→3,123백만원)되었다.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사업은 특정범죄신고자구조금의 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33백만원이 감액(13,387백만원→13,354백만원)되었다.[1)]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형사보상 사업, ②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 사업** 등이 있다.

형사보상 사업은 매년 증액 편성되고 있으나 집행 소요액이 당초 편성된 예산액보다 많아 부족분을 대부분 예비비로 배정받아 충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5,713백만원 증액(27,500백만원→33,213백만원)되었고,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 사업은 전국 공항 테러위험 대비 및 출입국 심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요원 36명 증원을 위한 예산 1,209백만원이 증액(40,102백만원→41,311백만원)되었다.[2)]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범죄피해자보호기금), **②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국유재산관리기금) 등이 있다.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은 "범죄피해자가 신변보호

1) 법제사법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1.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2) 법제사법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1.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목적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이전비를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예산은 법무부와 거창군이 합의가 되면 집행하도록 할 것"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3)]

3)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법무부는 ①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 보호, ②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③ 법무부 탈검찰화 및 과거사 진상규명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2018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법무부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교정시설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의정부 교도소는 수용인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미결수 비중이 기결수를 초과하여 교정·교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교정시설 공공요금 부족에 따라 연례적으로 이전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예비비 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법무부가 '맞춤형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예비비를 배정받아 수행한 사업 중 일부는 예비비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배상금은 연례적 예산부족으로 매년 예비비가 편성되고 있으므로, 향후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교정시설 운용상의 문제점

1-1. 과밀수용 완화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1]은 교정시설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 설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 교정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 회계연도 예산액 671억원 중 571억원(85.1%)을 집행하고 99억원을 이월하였다.

[2018회계연도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67,062	67,062	0	0	67,062	57,088	9,910	64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의정부 교도소는 수용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용인원 중 미결수 비중이 기결수를 초과하여, 사실상 교정·교화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531-30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미결수는 구치소에, 기결수는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다.[2)]

그런데 의정부 교도소의 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수용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결수용 인원이 기결수용 인원을 초과한 상태이다.

[최근 5년간 의정부교도소 수용인원]

(단위: 명,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일평균 인원	1,453	1,665	1,621	1,535	1,379
미결/기결	756/697	934/731	1,046/575	1,008/527	860/519
수용비율	133	153	149	141	127

주: 수용정원 1,090명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이에 대해 경기북부지역에는 현재 구치소가 없음에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의정부교도소 미결수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3)]

이처럼 관할 구역 내의 미결수용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나친 과밀 수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도에는 오히려 기결 수용인원을 축소하기도 하였다.[4)]

---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3. 미결 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3.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②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3) 의정부 관할 지역 내 인구는 2014년 약 323만 3,800명에서 2018년에는 약 339만 9,8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2016년에는 직업훈련 기능 이전, 기결수 타 기관 이송 등으로 기결 수용인원 250명 축소

원칙적으로 교정·교화 기능의 핵심 축인 교도작업은 기결수만 수행한다. 그러므로 교도소 내 기결수의 비중이 감소하면, 교도작업을 통한 교정·교화라는 교도소 본연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2014년만해도 의정부 교도소의 작업장은 총 12곳이었으나, 2019년 현재 남은 작업장은 2곳에 불과하다.

[연도별 의정부교도소 작업장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작업장 수	12	11	6	2	2

자료: 법무부

더욱이 교도관들이 미결 수용자의 검찰 조사, 법정 출석, 변호사 접견 관련 업무에 투입되는 일이 증가하게 되면, 교도소의 교정·교화 기능 축소가 가속화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 내 구치소 신설등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2. 교정시설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전용 등에 대한 개선 필요

가. 현 황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1]은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급식·피복·의료비용 및 수용자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2,215억 3,800만원 중 2,215억 100만원(99.9%)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	197,038	197,038	0	24,500	221,538	221,501	0	37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77,063	77,063	0	24,479	101,542	101,541	0	1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교정시설 공공요금 부족에 따라 연례적으로 이전용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공공요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2018년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의 당초 예산액은 770억 6,300만원이었으나 교도소 운영 인건비(7002-103) 사업에서 244억 7,900만원을 자체이용하여, 예산현액은 1,015억 4,200만원이며 이 중 1,015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동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최근 3년간 매년 예산이 부족하여 예비비 배정 및 이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해왔다. 2018년에는 예비비 배정은 없었으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532-300

나, 자체이용 금액이 약 245억원에 달해, 오히려 전년보다 예산액 대비 예산현액 증가규모가 더 컸다.

[연도별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6	68,270	68,270	0	10,989	0	79,259	79,258	0	1
2017	75,376	75,376	0	4,819	10,996	91,191	91,190	0	1
2018	77,063	77,063	0	24,479	0	101,542	101,541	0	1

자료: 법무부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도 전국 교정기관 연평균 수용인원은 54,744명으로 2017년 57,298명 대비 4.5%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집행액은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단가 상승과 하절기 폭염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

실제로 전체 공공요금 중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비중은 56%에 달하고, 공공요금의 2017년 대비 2018년 증가액 65억 7,200만원 중 42억 5,100만원(64.7%)이 수도 관련 요금이다.

2) 전국 상하수도 평균 요금 인상율은 각 지역별로 단가가 상이하여 정확한 통계 산출은 어렵다. 다만, 통계청 자료에 근거하여 법무부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상하수도 요금의 평균 인상률은 상수도 2.7%, 하수도 10.3%이다.

[2017~2018년도 공공요금 종류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집행액	2018년 집행액	증감액
①상수도요금	28,518	28,902	384
②하수도 요금	21,416	25,237	3,821
③물 이용 부담금	2,633	2,679	46
④도시가스 요금	6,308	6,325	17
⑤전기요금	13,343	13,863	520
⑥우편전화요금	3,096	3,205	109
⑦환경개선 부담금	44	41	-3
⑧오물수거료	2,354	2,954	600
⑨기타	17,258	18,334	1,076
합계	94,969	101,541	6,572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여름철 폭염이 심화되고 있어 냉방시설이 미비한 수용거실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물 사용량 증가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법무부는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공공요금 절약을 위해 전국 교정기관이 무분별한 물 사용을 제한하는 다양한 노력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절약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지나칠 경우 수용자의 건강과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수용인원은 물론, 공공요금 단가 및 사용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맞춤형 일자리 관련 예비비 배정·집행의 문제점

2-1.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예비비 배정 부적절

가. 현 황

법무부는 2018회계연도에 '맞춤형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일반예비비 총 30억 9,500만원을 배정받아 4개 세부사업에서 29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검찰청, 교정기관에 기록물관리 등 업무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것이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대상인 검찰청시설운영,[1] 외국인보호관리,[2]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3] 교도소행정지원[4] 등 4개 세부사업에는 공통적으로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인 일용임금(110-04목) 및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320-09)이 배정되었다.

세부사업별 예비비 배정·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8회계연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예비비 배정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배정액	집행액	불용액
검찰청시설운영	686	681	5
외국인보호관리	1,233	1,078	155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196	188	8
교도소행정지원	980	980	0
합계	3,095	2,927	168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333-300

2) 코드: 일반회계 1233-300

3) 코드: 일반회계 1232-300

4) 코드: 일반회계 1531-300

나. 분석의견

첫째, 예비비를 배정할 때에는 예측 불가능성 및 시급성 등의 예비비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비비 배정·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외국인보호관리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록물 정리와 관련된 업무보조 인력을 단기간 채용하였다.[5)]

[2018회계연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예비비 배정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세부사업	배정액	집행액	채용 인원	채용 기간	채용사유
검찰청시설운영	686	681	350	1개월	검찰청 형사사건 기록 정비 및 열람등사 업무 보조인력 필요
외국인보호관리	1,233	1,078	434	1개월	외국인 불법고용방지 및 자진출국 집중 계도 인력 필요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	196	188	95	1개월	출입국관리 기록물 정리 업무 보조인력
교도소행정지원	980	980	500	1개월	수용기록부의 관리 및 교정기관 외곽지역 정비를 위한 보조인력 필요
합계	3,095	2,927	1,379	-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우선, 검찰청시설운영 사업에 배정된 예비비를 통해 채용된 인력은 사건 기록 보관 및 정리, 판결문 및 결정문 파일 저장을 위한 스캔 업무에 투입되었고, 출입국

5) 외국인보호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기간'(2018. 10. 1. ~ 2019. 3. 31.) 운영에 따라,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계도 인력을 고용하였다.

사무소시설운영 사업에서 채용된 인력 역시 출입국 관리 기록물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교도소행정지원 사업의 예비비를 통해 채용된 인력은 수용기록부 등 기록물 정리와 교정기관 외곽지역 정비 업무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해당 세부사업에서 수행한 기록물 정리 등은 그 자체로 시급성이 요구되거나, 청사 이전과 같은 긴급한 기록물 정리의 필요가 제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법무부가 향후 예비비를 신청할 때에는 예측불가능성 및 시급성 등의 예비비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무부는 예비비 배정 신청 전에 기정예산으로 해당 재정소요 충당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편성된 일용임금(110-04목)은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이며, 이와 유사한 비목으로 기타직 보수(110-02)와 상용임금(110-03목)이 있다. 기타직 보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법령에 의하여 월지급액이 정하여진 기타의 직종에 대한 보수이며, 상용임금은 무기 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이다.

그런데 2018회계연도 법무부의 기타직 보수 및 상용임금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불용액은 54억 5,400만원에 달한다.

[2018회계연도 법무부 기타직 보수 및 상용임금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기타직 보수	38,678	39,047	35,613	62	3,372
상용임금	72,045	69,042	66,960	0	2,082
합계	110,723	108,089	102,573	62	5,454

자료: 법무부

법무부에 따르면,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비비는 2018년 10월에 신청하여 11월에 배정되었다. 예비비의 신청 배정 시기가 4분기이고, 기타직 보수 및 상용임금 등 유사 비목의 불용규모가 예비비 배정규모를 초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무부는 예비비 배정신청 전에 기정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교도소행정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관련 단기 인력 채용을 위해 배정받은 9억 8,000만원과는 별도로 6억 5,800만원을 기존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해 확보하였다.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예비비 배정 신청을 검토할 경우에는 기정예산으로 해당 재정소요 충당이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검찰청시설운영 사업의 예비비 배정·집행

가. 현 황

검찰청시설운영 사업[1]은 전국 검찰청 시설을 운용·관리하는 사업으로,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554억원 중 535억원(96.7%)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검찰청 시설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검찰청 시설운영	53,809	53,809	0	870	686	55,365	53,514	1,364	488
일용임금 (110-04)	0	0	0	0	619	619	616	0	3
고용 부담금 (320-09)	0	0	0	0	67	67	65		2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검찰청 시설운영 사업에 기록물 관리 인력을 채용을 위한 예비비를 배정·집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찰청은 검찰청시설운영 사업에 단기간의 인력채용을 위해 예비비 배정·집행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예비비를 통해 채용된 인력은 전국 각 청에서 보관중인 사건 기록 및 결정문 등의 보관·정리를 위한 복사 업무 등 기록물 보존 업무 과정의 보조 인력으로 활용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 검찰청에서 총 350명을 1개월간 채용하였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333-300

그런데 동 사업은 전국 검찰청 시설의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노후시설 개선, 긴급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비상대기소 확보,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당초 인건비(110목)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동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록물 보존·관리 등을 위한 보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용임금에 예비비를 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동 사업에서 2018년 개관한 '국가형사사법기록관'[2]으로의 기록물 이전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기록물 보존·관리 업무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비용을 배정·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형사사법기록관'으로의 이전 용역은 검찰청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지방검찰청별 기록물 관리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3]

따라서 법무부는 예비비가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배정될 수 있도록, 예비비의 각 세부사업별 배정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

2)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은 검찰의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해 2018년 11월에 대검찰청 소속으로 신설된 기관이다.

3)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14조(국가형사사법기록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기록관장은 보존기간이 영구, 준영구, 30년인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 후 다음 연도 중에 국가형사사법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참고 등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기록물 이관연기신청서를 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승인을 받아야 한다.

Ⅲ 개별 사업 분석

1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연례적 예비비 배정 부적절

가. 현 황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1]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2018년도 예산현액 4,185억원 중 3,955억원(94.5%)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배상금 지급	200,000	200,000	0	0	218,454	418,454	395,499	0	22,955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국가배상금은 연례적 예산부족으로 매년 예비비가 편성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향후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은 매년 예산액이 부족하여, 이·전용 또는 예비비 배정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해왔다. 법무부는 예산 부족에 따른 연례적인 이·전용 및 예비비 배정을 개선하기 위해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100% 증가한 2,00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역시 본예산의 109%에 해당하는 2,184억 5,40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하였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331-301

[연도별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14	23,600	49	181,414	205,063	205,062	1
2015	40,000	434	260,788	301,222	301,222	0
2016	55,000	23,610	158,005	236,615	236,615	0
2017	100,000	4,759	250,000	354,759	354,758	1
2018	200,000	0	218,454	418,454	762,218[1)]	22,955

주: 1) 2018년도 집행액 7,622억 1,800만원 중 3,752억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세계잉여금에서 집행

자료: 법무부

또한, 국가배상금은 지급액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2)] 소송 패소에 따른 국가배상사건 소송비용 확정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8년에는 지연이자 규모가 원금의 76.6%에 달하였다.

[연도별 지연이자 규모]

(단위: 백만원, %)

연 도	원 금(A)	지연이자(B)	비중(B/A)
2013	47,946	9,170	19.1
2014	170,647	28,224	16.5
2015	237,862	55,753	23.4
2016	180,227	48,468	26.9
2017	179,527	169,557	94.4
2018	431,486	330,732	76.6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배상금은 지급시기 및 금액이 법원 판결로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나 금액 예측이 곤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가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성립일로부터

2) 국가배상금 지연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5%의 지연이율(불법행위 성립일로부터 발생)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발생)의 적용을 받는다.

즉시 발생하므로, 수십 년 전인 과거사 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금 사건의 경우 지연이자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법무부는 "구로동 일대 농지에 대한 국가의 수용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확정(14바***** 등 7건, 2017.11.)[3]에 따라, 동 사업 예산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6,039억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중 지연이자만 3,066억 3,400만원에 달한다.

[구로농지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금 지급 규모]

(단위: 백만원)

연 도	원 금(A)	지연이자(B)	총 지급액
2017	116,668	155,163	271,831
2018	297,319	306,634	603,953

자료: 법무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이·전용 또는 예비비를 배정·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배상금 지급 지연으로 소송 당사자인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편, 법무부는 동 사업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하고, 229억 5,5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이는 법무부가 당초 예비비 배정 신청 시 선고가 완료되어 배상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개별사건들 중 일부 사건의 선고가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예비비 배정 신청 시, 배상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의 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용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 현재까지 이른바 '구로농지 사건' 중 일부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최소 1,916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3) 구로 농지사건은 정부가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목적으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 30만평의 농지를 수용한 사건으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국가의 공권력 부당 남용 사건'으로 나타나 피해자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다.

※ 구로농지 사건 재정 소요 현황(2019년 5월 기준)

① 총 재정소요(추정) : 1조 737억원 + α

* 선고기일 未지정 사건이 대부분으로 선고시기에 따라 지연이자 변동 가능

② 조치 완료 : 8,821억원

(2017년 3,209억원, 2018년 5,544억원, 2019년 68억원)

③ 향후 재정 소요(추정): 1,916억원 + α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국가배상금 예산 편성 시 계류 중인 사건, 패소가능성이 높은 고액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용 또는 예비비를 배정·집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가. 현 황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1]은 기업법제 수준을 개선하는 등 국가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동 사업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46억 4,600만원 중 45억 9,600만원(98.9%)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4,596	4,596	45	5	4,646	4,596	27	23
민간경상보조	3,682	3,682	0	0	3,682	3,682	0	0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중재 유치 확대를 위해 2018년에 '서울중재조정센터'를 신설하는 등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지원 규모가 증가하였으므로, 법무부는 국제 중재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따라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하는 역할을 하는 사단법인이다. 2016년에 제정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333-304

에 따라, 법무부는 2016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국제중재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3)]

법무부가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당초 대한상사중재원과 국제중재심리시설을 운영하는 서울국제중재센터에 국제중재 유치활동 및 홍보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국제중재센터는 2018년 5월 해산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통합되는 대신, 대한상사중재원 소속으로 국제중재조정센터[4)]를 신규 건립하면서 2018년 동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다.

[연도별 대한상사중재원 및 서울국제중재센터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대한상사중재원	1,340	1,151	3,442
서울국제중재센터	356	240	240
합계	1,696	1,391	3,682

주: 2018년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액에는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 신설 비용 포함
자료: 법무부

법무부의 예산지원은 국내 중재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국제 중재 유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나, 오히려 2018년에는 국제중재사건의 접수나 수수료 수입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물론, 이전 4개년도 평균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

2)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
2. 제6조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
3.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

3) 대한상사중재원은 2018년에 법무부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3억 5,200만원, 부산시·부산항만공사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4) 공식명칭은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Seoul IDRC(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이며, 2018년 4월 20일 개소하였다.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7, 18, 24, 43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약 2,000㎡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 실적 및 수입]

(단위: 건,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 중재 사건	사건 접수 건수	295	339	319	307	331
	수수료 수입	14.2	16.4	18.3	11.7	18.4
국제 중재 사건	사건 접수 건수	87	74	62	78	62
	수수료 수입	6.3	7.1	8.1	5	3
합 계	사건 접수 건수	382	413	381	385	393
	수수료 수입	20.5	23.5	26.4	16.7	21.4

자료: 법무부

더욱이 '서울중재센터' 신설되면서, 향후에도 센터 운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임차료, 관리비, 운영비 등으로 2019년에는 약 11억 7,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0년 이후에는 매년 12억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재센터 신설에 따른 향후 추가 재정소요]

(단위: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임차료	653,880	666,958	680,297	693,903
관리비	457,728	469,171	480,900	492,923
운영비	66,400	67,000	67,700	68,400
합계	1,178,008	1,203,129	1,228,897	1,255,226

주: 임차료, 관리비의 경우, 매년 평균 각 2.0%, 2.5% 인상 비율 반영하여 추산하였고, 운영비는 임차료·관리비 외 시설유지관리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매년 약 1.0% 인상률을 반영하여 추산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제중재사건 실적 제고는 전 세계 중재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사업 강화 등을 통한 인지도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고, 한국중재기관에서의 중재 이용에 합의한 경우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도 2018년에 해산된 '서울국제중재센터'를 통해 국제중재사건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고, 국제중재 유치 가능성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서울중재센터'를 신설한 취지를 감안할 때, 법무부는 국제중재유치 실적 제고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국제중재 유치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사업을 중재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5]

5)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6.30. 기준)에는 전년 동기 대비 국제중재사건 접수 실적은 다소 개선되었다.(28건→33건, 약 18% 증가)

3 영상녹화조사실의 활용도 제고 필요

가. 현 황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1]은 각종 감정·감식관련 첨단 장비도입 및 기법 개발, 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 구축, 영상녹화 조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2018회계연도 동 사업의 예산현액 66억 3,800만원 중 64억 5,700만원(97.3%)를 집행하였다.

법무부는 동 사업의 일환으로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8회계연도 과학수사인프라 구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과학수사 인프라구축	6,712	6,712	0	△74	6,638	6,457	0	181
영상녹화조사 소모품 등 구입	604	604	0	0	621	621	0	0
영상녹화조사실 등 설치	211	211	0	△9	203	203	0	0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영상녹화조사실 활용 실적의 전년 대비 감소 및 지방검찰청별 이용률 편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영상녹화조사실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화하는 것으로, 대검찰청 예규인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서 영상녹화의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2]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333-302

2)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3조(영상녹화 대상사건) ①검사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하 "피의자

법무부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 설치·운영비용으로 약 286억원[3]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2019년 현재 전국 검찰청에 841개의 영상녹화조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3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3개의 영상녹화조사실을 추가 설치하였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영상녹화조사실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건수 대비 영상녹화 조사건수 비율 기준으로 2016년 15.1%, 2017년 16.3%이며, 2018년에는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한 11.4%에 그쳤다.

[연도별 영상녹화조사실 활용 현황]

(단위: 건, %)

구분	전체 조사건수(A)	영상녹화 조사건수(B)	영상녹화비율(B/A)
2016	245,558	36,966	15.1
2017	227,418	37,007	16.3
2018	212,324	24,145	11.4

자료: 법무부

또한, 지방검찰청별 영상녹화조사실의 이용률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 검찰청 공주지청의 경우 영상녹화조사 비율이 42%인 반면, 대구고검의 경우에는 2018년에 영상녹화 조사를 단 한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조사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도 영상녹화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등"이라 한다)을 조사함에 있어, 피의자 등의 진술이 공소사실 입증에 반드시 필요하고, 사안의 중대성, 죄질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진술번복 가능성이 있거나 조서의 진정성립, 진술의 임의성, 특신상태 등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면 조서작성과 병행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한다.

②검사는 피의자 등을 조사함에 있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입증이 가능한 경우 또는 불기소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특성,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서작성 없이 피의자 등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3) 영상녹화조사실 설치를 위한 설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영상녹화장비 신규설치 및 교체)와 영상녹화조사실 운영을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2018년 지방청별 영상녹화조사실 활용 현황]

(단위: 건, %)

구분	전체조사건수	영상녹화조사 건수	월 평균 조사건수	영상녹화 비율
대구고검	130	0	0	0.00
서울고검	153	2	0.02	1.30
논산	872	14	0.29	1.60
서울중앙	20,853	362	0.42	1.70
영덕	577	11	0.31	1.90
대구지검	7,348	1,996	7.56	27.20
부천	4,661	1,465	8.14	31.40
군산	2,769	908	7.57	32.80
경주	1,051	404	6.73	38.40
공주	664	279	5.81	42.00

주: 영상녹화 비율 기준, 상하위 5개 검찰청(지청) 발췌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18년에는 인권침해 시비 가능성 있는 사건, 진술번복이 우려되는 사건 등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영상녹화조사를 집중하여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조사과정에서 실시되는 영상녹화는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나 불합리한 조치를 방지하는 등,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영상녹화 이용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무부는 영상녹화조사실 활용 실적의 전년 대비 감소 및 지방검찰청별 이용률 편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영상녹화조사실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벌금 및 과료 사업의 수납률 저조

가. 현 황

벌금 및 과료 사업[1]은 형법 제41조 및 출입국 관리법 제93조에 따른 벌금, 과료 수입으로, 동 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 1조 7,042억원 중 1조 2,155억원(71.3%)을 수납하였다.

[2018회계연도 벌금 및 과료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벌금 및 과료	1,704,236	1,704,236	0	1,704,236	1,215,755	1,215,520	235	0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제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수납액 감소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18회계연도 벌금 및 과료 사업의 수납률은 71.3%로 전년 대비 15.6%p 감소하였으며, 수납액 역시 1,266억 1,900만원 감소하였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집행 금액이 3조 1,235억원으로 전년 대비 6.9%(2,032억원) 증가하였고, 구약식[2] 기소 사건 역시 전년 대비 14%(약 7,800건) 감소한 47만 9,000건에 불과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56-561

2)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것

[2015~2019년 벌금 및 과료 사업의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15	1,649,772	1,392,699	1,392,687	84.4	99.9	11	0
2016	1,590,000	1,409,605	1,409,531	88.6	99.9	75	0
2017	1,545,300	1,342,368	1,342,139	86.9	99.9	229	0
2018	1,704,236	1,215,755	1,215,520	71.3	99.9	235	0
2019	1,461,803	-	-	-	-	-	-

자료: 법무부

더욱이 2018. 1.부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3]가 시행되고 있어 동 사업의 수납실적은 향후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도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2019년 예산액을 2018년 대비 2,424억원 감액된 1조 4,618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2018년 수납액에 비해 여전히 2,463억원이 많은 수준으로, 수납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법무부는 최근 사회봉사 집행 등 대체집행 증가, 벌금형의 집행유예 실시 등, 동 사업을 둘러싼 제도 및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예산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3)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5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성과 목표 달성 미흡

가. 현 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1]은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7년부터 수행하고 있다.[2]

동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회계연도 예산액 33억 4,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피보조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역시 2018회계연도에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3,343	3,343	0	0	3,343	3,343	0	0

자료: 법무부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331-302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분석의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과목표 대비 사업 실적이 저조하므로, 법무부는 사업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성과지표의 합리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중앙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6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조직 및 인원 현황(2019. 5. 30. 기준)]

(단위: 명)

지역	조정위원	심사관	조사관	실무관
서울중앙	13	3	4	1
수원	12	2	4	1
대전	9	2	3	1
대구	7	1	2	1
부산	11	2	3	1
광주	12	1	2	1
합계	64	11	18	6

주: 조정위원에는 지부별 사무국장 1인이 포함
자료: 법무부

2018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사업 실적은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한 2,515건이다. 이는 2017년에 예산에 신규 반영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이 같은 해 하반기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수행되어 2017년에는 6개월간의 실적만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연도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 실적]

(단위: 건, %)

연도	접수	처 리							진행
		계	조정미개시		조정개시				
			각하	취하 등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미조정 결정	취하 등	
2017	**1,088**	**888**	277	247	266	37	2	59	**200**
	100.0	**82.0**	25.5	22.7	24.4	3.4	0.2	5.4	**18.3**
2018	**2,515**	**2,337**	758	753	569	56	4	197	**178**
	100.0	**92.9**	30.1	30.0	22.6	2.2	0.2	7.8	**7.1**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 사건 중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이미 소가 제기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어 각하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2018년에 조정신청 접수된 사건 2,515건 중 조정절차를 실질적으로 개시하여 처리한 사건은 826건으로 전체 접수 사건의 32.8%이다.

동 사업은 '분쟁조정 수혜자 수'[3]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 연도 분쟁조정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측정된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사업실적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2017년 29.8%, 2018년에는 34.4%에 불과하였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현황]

(단위: 건, %)

성과지표	구분	2017	2018	측정방법
분쟁조정 수혜자 수	목표	3,652	7,305	당해연도 분쟁조정접수 수혜자 수
	실적	1,088	2,515	
	달성도	29.8	34.4	

주: 2017년의 경우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되어 6개월분만 반영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법무부는 "2014년 법원 민사사건 중, 임대차사건 비율 2.1%를 반영한 조정접수 수혜자수"를 근거로 성과목표 7,305명을 산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그 밖의 지역 거주자에게 접근성이 낮아 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 사업에서 성과목표로 설정한 '분쟁조정 수혜자 수' 대비 실제 접수 건수 비율이 최근 2년간 30% 내외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성 향상을 명분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지부를 확대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법무부는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접수 활용,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업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조정절차를 거친 사건 처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무부는 조정절차를 실질적으로 개시하여 처리한 사건이 전체 조정신청 사건의 32.8%에 불과한 상황에서, 조정신청 접수 건수 전체를 사업실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특정범죄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가. 현 황

특정범죄관리 사업[1]은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및 24시간 위치정보 확인·감독을 통해 특정 범죄자의 재범 억제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171억원 중 168억원(98.3%)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특정범죄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특정범죄관리	17,072	17,072	0	0	17,072	16,779	5	288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2018년에는 과거에 비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인 특정범죄자의 재범률이 증가하였으므로, 법무부는 재범 발생 감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 등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출소 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전자감독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정범죄자의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위치정보 상시 모니터링, 생활 지도·감독,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635-301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범죄자는 2018년 기준으로 3,126명이다.

[연도별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수]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수	2,129	2,313	2,696	2,981	3,126

자료: 법무부

그런데 최근 5년간 전자장치 부착대상자인 특정범죄자의 재범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1.72%에서 2018년 2.01%로 다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전년대비 0.24%p가 증가하여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재범률이 2%를 넘어섰다.

[연도별 특정범죄자 재범률]

(단위: 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특정범죄 사건	3,260	3,598	4,066	4,350	4,668
특정범죄 재범사건 (재범률)	52 (1.72)	62 (1.72)	69 (1.70)	77 (1.77)	94 (2.01)

주: 특정범죄자가 절도 등 일반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재범 건수에서 제외
자료: 법무부

법무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재범률 증가는 전자장치 부착대상인 특정범죄의 범위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실제로 전자장치 부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는 2008년 성폭력에만 적용되다가, 법률개정을 통해 2009년에 미성년자 유괴, 2010년에는 살인, 2014년에는 강도 범죄가 대상 범위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는 특정범죄 재범 사건의 건수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범률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를 상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

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1:1 전담 보호관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시 강화와 더불어 심리상담 등 재활 중심의 지도감독방식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법무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결산상 문제점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253

법제처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1억 2,57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2.7%인 4,119만원을 수납하고 8,458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8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0	0	0	126	41	85	0	32.7

자료: 법제처

2018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32억 5,782만원이며, 이 중 97.8%인 325억 3,694만원을 지출하고 7억 2,088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3,258	33,258	33,258	32,537	0	721	97.8

자료: 법제처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나.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법제처의 자산은 156억 5,710만원, 부채는 3,060만원으로 순자산은 156억 2,651만원이다.

자산은 일반유형자산 100억 6,860만원, 무형자산 50억 6,108만원, 기타비유동자산 5억 194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2억 4,077만원(7.3%) 감소하였다. 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 등에 따른 무형자산 10억 5,646만원 감소,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1억 5,67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971만원, 장기충당부채 1,088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089만원(55.2%) 증가하였다. 이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인 장기충당부채의 1,089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법제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5,657	16,898	△1,241	△7.3
Ⅰ. 유동자산	25	544	△519	△95.4
Ⅱ. 투자자산	0	9	△9	△100.0
Ⅲ. 일반유형자산	10,069	10,225	△156	△1.5
Ⅳ. 무형자산	5,061	6,118	△1,057	△17.3
Ⅴ. 기타비유동자산	502	2	500	25,000.0
부 채	31	20	11	55.2
Ⅰ. 유동부채	20	20	0	0.0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0
Ⅲ. 장기충당부채	11	0	11	0.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0
순 자 산	15,626	16,878	△1,252	△7.4
Ⅰ. 기본순자산	3,973	3,973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0,082	11,334	△1,252	△11.0
Ⅲ. 순자산 조정	1,571	1,571	0	0.0

자료: 법제처

법제처는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63억 782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53억 7,691만원, 관리운영비 309억 4,734만원, 비배분비용 2,476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4,119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3억 1,702만원(3.8%) 증가한 363억 782만원이며, 이는 주로 인건비 증가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7억 4,729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2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는 정부입법총괄지원 프로그램(55억 800만원)과 법제행정지원 프로그램(277억 4,982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84억 7,019만원과 경비 124억 7,71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2,476만원과 기타비용 23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법제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	5,377	5,794	△417	△7.2
Ⅱ. 관리운영비	30,947	29,200	1,747	6.0
Ⅲ. 비배분비용	25	5	20	363.9
Ⅳ. 비배분수익	41	8	33	401.0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36,308	34,991	1,317	3.8
Ⅵ.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36,308	34,991	1,317	3.8

자료: 법제처

법제처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168억 7,815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56억 2,650만원으로 기초 대비 12억 5,165만원(7.4%)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363억 782만원이고, 순자산 가산 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350억 5,617만원이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기타재원조달 등 350억 9,735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4,118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없다.

[2018회계연도 법제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16,878	17,725	△847	△4.8
Ⅱ. 재정운영결과	36,308	34,991	1,317	3.8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5,056	34,144	912	2.7
Ⅳ. 조정항목	0	0	0	0.0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5,627	16,878	△1,251	△7.4

자료: 법제처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법제처의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법제정비 사업**이 있다. 법제정비 사업은 국민법제관 사업의 회의 참석률 저조 및 자문건수 감소에 따라 관련 예산 3,000만원이 감액되었다.[1)]

1) 법제사법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1.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법제처는 ① 법령과 제도에 존재하는 부당한 **차별법령 정비** ② 어려운 법률용어 발굴·정비를 통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을 2018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법제처는 법제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제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동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민법제관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의 집행 및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법제처는 당초 편성된 계획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교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국민법제관 제도 활성화 필요

가. 현 황

법제정비 사업[1]은 불합리한 규제 및 불편법령 등을 개선하고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예산현액 9억 9,100만원 중 9억 2,600만원(93.4%)을 집행하였다.

법제처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법령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8회계연도 국민법제관 운영 예산액은 1,5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다.

[2018회계연도 법제정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법제정비	835	835	0	156	991	926	0	65
법령정비	297	297	0	△1	296	262	0	34

자료: 법제처

나. 분석의견

법제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동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제처는 국민법제관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032-301

'국민법제관' 은 법령심사·해석·개선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국민법제관이 회의참석 또는 서면(온라인 포함)으로 법령 개선의견을 제출하면, 법제처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법령 개정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법제처 훈령인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민법제관은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법제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2] 2018년 말 기준, 위촉된 국민법제관은 총 188명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법제관의 의견제시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법제관 1인당 의견제출 건수는 2018년에도 연간 1.29건에 불과하다. 특히, 위촉된 국민법제관 중 일부는 연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200명 중 82명, 2017년에는 188명 중 124명, 2018년에는 188명 중 126명만이 1회 이상 의견을 제시하였다.

---

2)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국민법제관의 위촉) ① 국민법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되, 법제처장은 각계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야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제업무에 자문·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천한 사람
2. 해당 분야와 관련된 협회, 단체, 공사, 공단 등의 장이 그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제업무에 자문·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천한 사람
3. 해당 분야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그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제업무에 자문·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천한 사람
4. 국민법제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여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 중 법제처장이 법제업무에 자문·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법제처장이 해당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제업무에 자문·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국민법제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분야의 자문·참여 등을 위하여 수시로 위촉되는 국민법제관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법제처장이 조정할 수 있다.

[연도별 국민법제관 의견제출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의견제출 건수	104	142	243
국민법제관 수	200	188	188
1인당 의견제출 건수	0.52	0.76	1.29
의견제출 법제관 수	82	124	126

자료: 법제처

무보수 명예직인 국민법제관에게 의견제시를 포함한 활동 실적 제고를 독려하는 것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다만, 활동 실적이 지나치게 저조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제도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제처는 국민법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의 철저한 계획 수립 필요

가. 현 황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1]은 외국 법제기관과의 방문 교류를 통해 최신 법제 동향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예산현액 1억 4,000만원 중 1억 2,700만원(90.7%)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외국기관법제교류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외국법제기관교류	140	140	0	0	140	127	0	13
국외업무여비 (220-02)	56	56	0	0	56	47	0	9

자료: 법제처

나. 분석의견

법제처는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장기적 관점의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는 당초 동 사업을 통해 '중남미 법제기관 교류', '중국 판공실 교류' 등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인도네시아 법제교류', '일본 내각법제국 방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및 외국법제기관 교류' 명목으로 당초 630만원을 책정하고, 실제로는 1,910만원을 집행하였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034-301

[2018년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여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당초 계획	예산액	집행 내역	집행액
중남미 법제기관 교류	35.5	인도네시아 법제교류	12.5
중국 판공실 교류	6.8	일본 내각법제국 방문	6.5
동남아시아 법제기관 교류	7.3	미얀마 법제교류	9.2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및 외국법제기관 교류	6.3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및 외국 법제기관 초청	19.1
합계	55.9	-	47.3

자료: 법제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법제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법제교류'는 2018년에 인도네시아 측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측 요청에 따라 법제처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실시하였고, '일본 내각법제국 방문'은 당초 방문 대상이었던 중국 법제판공실이 2018년 중국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에 없던 '일본 내각법제국 방문'을 실시하고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예산을 초과 지출하고, 당초 계획되었던 '중남미 법제기관 교류'를 전혀 시행하지 못한 것은 적절한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법제처가 2016년에 멕시코와 콜롬비아에 공공행정 협력단을 파견하는 등 교류의 단초를 마련하고도 2018년에 계획되었던 '중남미 법제기관 교류'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제교류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한편, 2018년 10월에 개최한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금액을 집행하였는데, 법제처에 따르면 초과 금액 대부분은 외국 연사 초청비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그런데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초청되는 외국 연사의 인원 규모를 개최 시점과 주제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한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초청 연사 인원 규모를 명확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의 추진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제처는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교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총계 기준 세입 결산액은 총 4억 5,300만원으로 예산액 4억 4,800만원 대비 101.1% 수납되었으며, 8억 3,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8,100만원이 미수납되었다.

[2018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48	448	448	834	453	381	0	101.1

자료: 감사원

총계 기준 세출 결산액은 총 1,241억 9,900만원이고, 예산현액 1,323억 2,400만원 대비 93.9%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13억 5,300만원, 불용액 67억 7,2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다.

[2018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29,690	129,690	132,324	124,199	1,353	6,772	93.9

자료: 감사원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나.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감사원의 자산은 1,768억 3,900만원, 부채는 6억 5,200만원으로 순자산은 1,761억 8,7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7억 2,300만원, 일반유형자산 1,658억 7,500만원, 무형자산 77억 3,1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5억 1,0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억 7,700만원(0.3%) 감소하였다. 이는 유형자산 구매 등으로 14억 5,800만 원 증가, 감사자료분석시스템 3단계 구축으로 46억 5,30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유·무형자산 감가상각으로 50억 6,4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100만원, 장기충당부채 6억 4,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억 3,700만원(57.1%) 증가하였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무보조원 등(57명)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2억 3,7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감사원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76,839	177,416	△577	△0.3
Ⅰ. 유동자산	2,723	3,006	△283	△9.4
Ⅱ. 일반유형자산	165,875	166,838	△963	△0.6
Ⅲ. 무형자산	7,731	5,721	2,010	35.1
Ⅳ. 기타비유동자산	510	1,852	△1,341	△72.4
부 채	652	415	237	57.1
Ⅰ. 유동부채	11	2	9	450.0
Ⅱ. 장기충당부채	641	413	228	55.2
순 자 산	176,187	177,001	△814	△0.5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368억 8,2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1,373억 700만원, 비배분비용 1,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4억 1,200만원, 비배분수익 3,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60억 5,900만원(4.6%) 증가한 1,368억 8,2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29억 4,500만원, 감가상각비 13억 3,200만원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감사원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	136,895	130,699	6,196	4.7
Ⅱ. 관리운영비	-	-	-	-
Ⅲ. 비배분비용	17	195	△178	△91.3
Ⅳ. 비배분수익	30	71	△41	△57.7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36,882	130,823	6,059	4.6
Ⅵ. 비교환수익 등	-	-	-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36,882	130,823	6,059	4.6

자료: 감사원

감사원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1,770억 1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761억 8,700만원으로 기초 대비 8억 1,400만원(0.5%)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368억 8,2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 항목이 1,360억 9,500만원 발생하였고, 기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조정항목이 2,700만원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세출결산액) 1,241억 9,900만원, 공무원 연금 등 국가부담액 123억 4,900만원 등 재원의 조달 1,365억 4,800만원과 재원의 이전 △4억 5,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유형자산(건물) 재평가이익 중 당기 감가상각에 따른 환입 2,7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감사원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177,001	176,059	942	0.5
Ⅱ. 재정운영결과	136,882	130,823	6,059	4.6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36,095	131,792	4,303	3.3
Ⅳ. 조정항목	△27	△27	0	0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76,187	177,001	△814	△0.5

자료: 감사원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감사원의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인건비, ② 감사활동경비 사업** 등이 있다.

인건비는 그간의 집행실적(부적정한 전용 집행 및 불용)과 2018년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억 4,000만원 감액(867억 4,000만원→865억원)되었다.[1)]

감사활동경비는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용역 관련하여 계약금액 감소 추세 및 지속적인 낙찰차액 발생, 유사율이 높은 연구용역비 결과에 대한 연구비 환수 등 후속조치 및 집행실적 등 감안하여 일반연구비가 2억 원(231억 9,800만원→229억 9,800만원) 감액되었다.[2)]

국회심사 과정에서 감사활동경비 사업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의 후순위채 대출 및 대출이자의 적정성을 관련 감사시 점검할 것" 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3)]

---

1) 법제사법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1.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2) 법제사법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1.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3)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감사원은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에 적극 동참하면서 감사환경 변화 및 감사 프로세스 개선 등에 따라 감사활동 관련 경비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하고, 절감 재원은 신규사업을 위한 소요재원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2018년 감사권익보호관의 소명자료 검토 수행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감사원은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권익보호관 자문료가 별도의 기준 없이 월정액으로 책정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감사원은 위탁계약 등으로의 사업운영방식 변경을 검토하거나 구체적인 자문료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감사원의 재심의 처리건수 중 법정 처리기간을 도과한 비율이 과도하게 나타나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감사원은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감소 추세였던 재심의 인용률이 2018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므로 감사결과의 완성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감사권익보호관 제도 활성화 노력 필요 등

가. 현 황

감사권익보호관 운영 사업은 감사권익보호관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사활동경비[1]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1억 800만원 중 집행액은 5,400만원으로 5,4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8회계연도 감사권익보호관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감사활동경비	22,998	22,998	525	0	0	23,523	22,167	241	1,115
감사권익보호관 운영	108	108	0	0	0	108	54	0	54

자료: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는 감사의 이해관계자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적극행정면책[2]을 신청하거나 이견을 제출하는 경우 소명인의 입장에서 소명자료를 검토·지원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감사원은 2015년 9월 1일 동 제도를 시범도입하면서 정부법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부법무공단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31-303

2)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공무원 등이 규제개혁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로서, 「감사원법」 제34조의3에 근거하고 있다.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소속 변호사를 감사권익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해왔으며, 2018년부터 감사권익보호관 운영 예산을 감사활동경비 사업 내에 별도로 편성하여 정부법무공단에 지급하고 있다.

[2018년도 감사권익보호관 운영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세목코드)	예산편성내역		세부집행내역	
	내 용	금액	내 용	금액
일반수용비(210-01목)	감사권익보호관 자문료 (30만원 × 30건 × 12개월)	108	감사권익보호관 자문료	54

자료: 감사원

나. 분석의견

감사원은 감사권익보호관 운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18년 감사권익보호관의 소명자료 검토 수행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감사원은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감사권익보호관 운영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50%에 불과한데, 이는 2018년 예산 편성 시 2명의 감사권익보호관의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자문실적이 계획에 비해 저조함에 따라 1명의 감사권익보호관만 지정·운영하였기 때문이다.[3)]

감사원은 2018년도 감사권익보호관 운영 예산을 편성할 때 연간 360건의 자문이 실시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018년 자문실적은 총 90건으로, 계획 대비 자문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

3) 감사원은 2019년도 감사권익보호관 운영 사업 예산을 2018년 대비 1/2인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

[연도별 감사권익보호관 소명자료 검토 실적]

(단위: 건)

2015(9월~12월)	2016	2017	2018	2019(4월 기준)	계
51	150	140	90	49	480

자료: 감사원

[2018년도 감사권익보호관 월별 소명자료 검토 실적]

(단위: 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9	0	6	10	9	5	15	3	2	12	12	7	90

자료: 감사원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적극행정면책 활성화를 위해 감사를 수행한 부서와 별개로 적극행정면책 제도 전반을 전담하는 "적극행정지원단"을 신설(2018. 2.)하는 등 감사권익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2018년 자문실적이 계획된 360건의 25%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은 감사업무 수행 시 피감기관에 감사권익보호관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감사권익보호관 자문료가 별도의 기준 없이 월정액으로 책정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감사원은 위탁계약 등으로의 사업운영방식 변경을 검토하거나 구체적인 자문료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감사권익보호관의 자문료를 일률적으로 월 450만원으로 책정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해당 금액은 별도의 기준 없이 감사원이 정부법무공단과의 협약에 의해 책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권익보호관의 업무는 면책 및 소명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작성에 그치지 않고 관련자 면담, 감사위원회의 참석·의견진술 등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명자료 검토 실적만을 근거로 자문료를 지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월정액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사권익보호관은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감사권익보호관으로서의 자문실적과 무관히 공단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의 보수(감사원 자문료 포함)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일률적인 월정액 지급을 위해서는 사업운영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사원은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위탁계약 방식을 활용하는 등 동 사업의 운영방식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방식대로 일반수용비를 이용하여 감사권익보호관 자문료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문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자문건수 및 자문 난이도 등 자문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 노력 필요 등

가. 현 황

감사활동경비[1]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감사·직무감찰 등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현액 235억 2,300만원 중 집행액은 221억 6,700만원으로, 2억 4,100만원이 이월되었고 11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8회계연도 감사활동경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감사활동경비	22,998	22,998	525	0	0	23,523	22,167	241	1,115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감사활동경비 사업의 일환으로 「감사원법」 제36조[2] 내지 제40조에 의거하여 재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심의 제도는 감사원에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상판정과 징계·시정·주의 등의 처분요구를 하는데, 이와 같은 변상판정 또는 처분요구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거나 사실판단의 오류에 기인한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상 또는 신분상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수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감사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31-303

2) 「감사원법」
제36조(재심의 청구) ① 제31조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원에서 감사원이 행한 변상판정 또는 처분요구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3]

나. 분석의견

감사원의 재심의 처리건수 중 법정 처리기간을 도과한 비율이 과도하게 나타나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감사원은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감소 추세였던 재심의 인용률이 2018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므로 감사결과의 완성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감사원법」 제38조제3조[4]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재심의 청구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최소 287일에서 최대 371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60일 이내 처리된 건수는 총 7건으로 전체 처리건수 중 13.7%에 불과하며, 전체 처리건수 중 1년을 초과하여 처리된 비율은 35.3%에 달하고 있다.

재심의의 특성상 신중한 처리를 위해 법정기간이 도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적극적인 재심의 처리를 위해 「감사원법」에서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재심의 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300일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감사원은 재심의 처리기간을 정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3)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bai.go.kr/bai/html/examinationclaims/reexaminationinfo.do?mdex=bai57(재심의 청구안내)

4) 「감사원법」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처분의 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③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재심의 청구 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 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처분요구	3,147	3,506	2,648	2,760	1,923
재심의 청구대상 처분요구 (권고, 통보 제외)	1,848	2,014	1,497	1,577	1,066
접수건수	40	50	68	72	29
처리건수	41 (100)	36 (100)	57 (100)	94 (100)	51 (100)
60일 이내 (비율)	5 (12.2)	3 (8.3)	6 (10.5)	7 (7.4)	7 (13.7)
60일~365일 (비율)	20 (48.8)	21 (58.3)	21 (36.8)	51 (54.3)	26 (51.0)
365일 초과 (비율)	16 (39.0)	12 (33.3)	30 (52.6)	36 (38.3)	18 (35.3)
건당 평균 처리기간	320	345	371	328	287
인용율	19.5	16.7	10.5	7.4	9.8
행정소송 건수 (재심의 결과 불복)	2	2	1	4	1

자료: 감사원

한편, 재심의 인용율의 경우 2014년 이후 감소 추세(2014년 19.5% → 2017년 7.4%)였으나 2018년부터 증가(7.4% → 9.8%)하고 있다는 점, 최근 5년간 재심의 인용율이 평균 12%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은 감사결과의 완성도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139억 7,600만원이며, 6,909억 7,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9%인 6,904억 500만원을 수납하고 5억 4,7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0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8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49,702	649,702	649,702	406,624	406,056	547	20	99.9
등기특별회계	364,274	364,274	364,274	284,349	284,349	0	0	100.0
합계	1,013,976	1,013,976	1,013,976	690,973	690,405	547	20	99.9

자료: 대법원

2018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9,347억 100만원이며, 이 중 92.1%인 1조 7,813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 1,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11억 1,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2018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552,424	1,552,424	1,559,550	1,539,308	458	19,784	98.7
등기특별회계	364,274	364,274	375,151	242,065	1,753	131,332	64.5
합계	1,916,698	1,916,698	1,934,701	1,781,373	2,211	151,116	92.1

자료: 대법원

나. 기금 결산

2018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현액은 583억 3,600만원이며, 657억 8,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0%인 651억 2,300만원을 수납하고 6억 6,1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8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58,336	58,336	58,336	65,785	65,123	661	1	99.0

자료: 대법원

2018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583억 3,600만원이며, 111.6%인 651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 2,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사법서비스진흥기금	58,336	58,336	58,336	65,123	0	2,920	111.6

자료: 대법원

다.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대법원의 자산은 6조 7,047억 7,700만원, 부채는 804억 7,700만원으로 순자산은 6조 6,242억 9,9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52억 4,300만원, 일반유형자산 6조 6,277억 5,900만원, 무형자산 456억 9,3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60억 8,2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856억 800만원(1.3%) 증가하였다. 이는 토지 및 건설 중인 자산의 증가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778억 7,700만원 증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 89억 5,6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277억 1,700만원, 장기차입부채 527억 6,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99억 1,500만원(11.0%) 감소하였다. 이는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및 기타유동부채의 감소에 따른 유동부채 89억 5,800만원 감소, 장기차입금의 감소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9억 5,700만원 감소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대법원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6,704,777	6,619,169	85,608	1.3
Ⅰ. 유동자산	25,243	16,287	8,956	55.0
Ⅱ. 투자자산	0	0	0	0
Ⅲ. 일반유형자산	6,627,759	6,549,882	77,877	1.2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45,693	47,210	△1,517	△3.2
Ⅵ. 기타비유동자산	6,082	5,791	291	5.0
부 채	80,477	90,392	△9,915	△11.0
Ⅰ. 유동부채	27,717	36,675	△8,958	△24.4
Ⅱ. 장기차입부채	52,760	53,717	△957	△1.8
Ⅲ. 장기충당부채	0	0	0	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6,624,299	6,528,777	95,522	1.5
Ⅰ. 기본순자산	3,931,502	3,931,502	0	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697,502	655,731	41,771	6.4
Ⅲ. 순자산 조정	1,995,295	1,941,544	53,751	2.8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조 3,666억 1,3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835억 9,5 00만원, 관리운영비 1조 8,896억 6,200만원, 비배분비용 24억 4,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5,541억 4,200만원, 비교환수익 549억 4,2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결과(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비교환수익)는 전년도 대비 1,241억(10.0 %) 증가한 1조 3,666억 1,300만원이며, 이는 주로 인건비의 증가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604억 3,900백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프로그램순원가에는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 1개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순원가는 일반회계(761억 3,100만원), 등기특별회계(74억 6,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조 2,232억 8,800만원과 경비 6,663억 7,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7,300만원, 이자비용 500만원, 평가손실 4,700만원, 자산처분손실 8억 9,500만원, 기타비용 14억 2,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재화및용역제공수익 5,261억 5,000만원, 이자수익 1억 7,000만원, 자산처분이익 194억 9,700만원, 기타수익 83억 2,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환수익은 제재금수익 4억 6,600만원과 기타재원조달및이전 544억 7,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대법원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83,595	73,614	9,981	13.6
가. 프로그램 총원가	83,595	73,614	9,981	13.6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
Ⅱ. 관리운영비	1,889,662	1,829,223	60,439	3.3
Ⅲ. 비배분비용	2,440	5,190	△2,750	△53.0
Ⅳ. 비배분수익	554,142	616,446	△62,304	△10.1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421,555	1,291,581	129,974	10.1
Ⅵ. 비교환수익 등	54,942	49,068	5,874	12.0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366,613	1,242,513	124,100	10.0

자료: 대법원

대법원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6조 5,287억 7,7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6조 6,242억 9,900만원으로 기초 대비 955억 2,200만원(1.5%)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초순자산이 전기 대비 267억 1,100만원 증가하였고,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1,241억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전기 대비

1,205억 8,1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기 대비 723억 3,1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기타비교환수익,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2조 1,012억원과 국고이전이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6,928억 1,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537억 5,1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대법원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6,528,777	6,502,066	26,711	0.4
Ⅱ. 재정운영결과	1,366,613	1,242,513	124,100	10.0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408,384	1,336,053	72,331	5.4
Ⅳ. 조정항목	53,751	△66,830	120,581	180.4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6,624,299	6,528,777	95,522	1.5

자료: 대법원

라. 재정 구조

2018회계연도 대법원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등기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69억원 전출되었다.

[2018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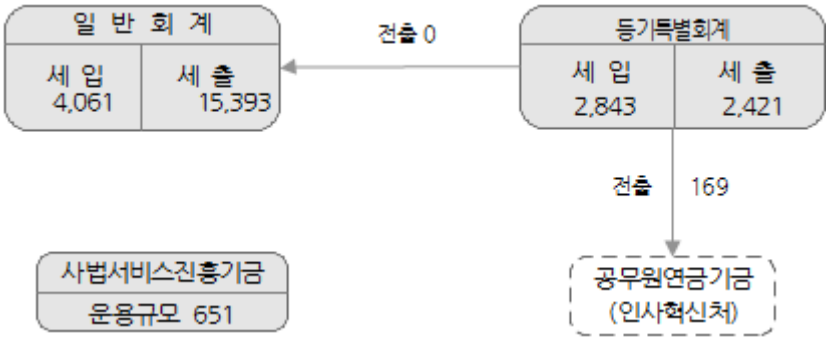

주: 총계 기준

자료 : 대법원

2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대법원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연수원 인건비, ②법정중심재판운영, ③ 사실심충실화(전문법률분야실무연구회) ④재판일반경비지원** 등이 있다.

연수원 인건비 사업은 상임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6,400만원이 감액(153억 800만원 → 152억 4,400만원)되었고, 법정중심재판운영사업은 상임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1억원이 감액(214억원 7,400만원 → 213억원 7,400만원)되었다. 사실심충실화(전문법률분야실무연구회)사업은 상임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1억 4,500만원이 감액(335억 6,100만원 → 334억 1,600만원)되었고,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은 예결위 감액의견 수용 및 감액소위 추가결정에 따른 감액규모 조정에 따라 7억 100만원이 감액(397억 4,000만원 → 390억 3,900만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가족등록업무전산화, ② 사실심충실화(세계성년후견대회지원), ③등기소 신·증축(사법역사문화교육관 신축), ④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지방근무법관 및 직원에 대한 교통여비 지원)** 등이 있다.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사업은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9억 9,400만원이 증액(174억 9,800만원 → 184억 9,100만원)되었고, 사실심충실화(세계성년후견대회지원) 사업은 후견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5,000만원이 증액(335억 6,100만원 → 336억 1,100만원)되었다. 등기소 신·증축(사법역사문화교육관 신축) 사업은 체육시설을 위하여 15억원이 증액(261억 7,700만원 → 276억 7,700만원)되었고,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지방근무법관 및 직원에 대한 교통여비 지원) 사업은 지방근무 법관 및 직원들의 서울지역 공무출장 비용 일부 지원을 위하여 3억원(109억 7,500만원 → 112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재판일반경비지원, ②사실심충실화** 등이 있다.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과 사실심충실화 사업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시 사업을 성질별로 재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것”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대법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① 국민을 위한 합리적 사법제도 구현, ② 평생법관제 정착과 인사제도 개선, ③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구현, ④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 기여하는 법원 실현 ⑤ 내일을 여는 세계 속의 사법부 구현을 2018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대법원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의 최근 5년간 세입예산 대비 수납률은 약 70~80% 수준을 보이고 있어 세입예산이 과다편성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수납액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적용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원정책연구비를 통하여 수행한 일부 연구과제는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할 때, 사법정책연구 개선 사업의 법원정책연구비보다는 다른 회계(기금), 프로그램이나 단위사업에 속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법원정책연구비 연구과제를 사법정책연구 개선 사업의 고유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연구주제 중심으로 선정하고, 그 밖에 다른 연구주제의 경우 관련성이 높은 사업에 소요 예산을 편성하여 수행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매년 발생하는 초과 수입이 주요사업에 투입되지 않고 여유자금 운용으로 편입되어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확대 등 기금 주요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적정 규모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적정 규모 세입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2018년도 대법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97억 200만원으로, 62.5%인 4,060억 5,500만원이 수납되었다. 일반회계 세입과목 중 면허료 및 수수료는 세입예산 3,841억 4,000만원 중 72.7%인 2,792억 8,300만원이 수납되었다.[1)]

[2018회계연도 대법원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결산	2018 예산		결산	수납률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세입	426,532	649,702	649,702	406,055	62.5
면허료 및 수수료	278,193	384,140	384,140	279,283	72.7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대법원의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됨에 따라 과다편성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수납액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적용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1) 대법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은 대법원 소관 등기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 1,236억 4,000만원 전액이 수납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등기특별회계의 주요 세입과목인 등기특별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실적이 세입예산 3,313억 4,400만원 대비 2,431억 3,700만원으로 저조한데 기인한 것으로 등기특별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의 과다편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만, 2019년도 등기특별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은 2018년도 대비 430억 5,000만원 감액된 2,882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대법원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면허료 및 수수료는 세입예산 기준으로 65.2%, 수납액 기준으로 68.8%를 차지하는 주요 세입과목이다.

면허료 및 수수료의 최근 5년간 세입예산 대비 수납률은 약 70~80%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연도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수납액은 큰 편차가 없는데 반해 세입예산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큰 편으로, 수납액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세입예산(A)	징수결정액	수납액(B)	수납률(B/A)
2014	420,655	296,903	296,903	70.6
2015	420,660	291,095	291,095	69.2
2016	350,000	274,302	274,302	78.4
2017	338,900	278,193	278,193	82.1
2018	384,140	279,283	279,283	72.7
2019	384,140	-	-	-

자료: 대법원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은 2017년도 이후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수납액 규모의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과다편성된 전년도 예산액이 연례적으로 영향을 미쳐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이 과다편성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을 산출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연도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연도	세입예산	산출근거
2016	350,000	■ (2014결산액+인지료 인상액) × (2011~15년 결산 연평균 증가율) = (296,903백만원 + 19,500백만원) × (1.052) = 350,000백만원
2017	338,900	■ (2016예산액) × (2012~15년 결산 연평균 증가율) = (350,000백만원) × (△1.02) ≒ 338,900백만원
2018	384,140	■ (2017예산액) × (인지수수료 인상효과 기대치) = (338,900백만원) × (1.13) ≒ 384,140백만원
2019	384,140	■ 2018년도 예산액 수준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을 수납액을 기준으로 연도별 증감 추이, 인지수수료 인상 등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적용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2 법원정책연구비 연구과제의 적정한 선정 등 정책연구용역 사업 추진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1]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국민의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사법부의 중·장기 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법정책연구 수행을 통하여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과 재판제도 개선을 도모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의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32억 6,100만원으로, 27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9,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다.

동 사업은 양형제도 개선지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 법원정책연구비,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관련 법적 문제 연구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8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법정책연구 개선	2,954	2,954	307	0	3,261	2,777	292	192
양형제도 개선지원	1,404	1,404	0	0	1,404	1,292	55	57
사법정책연구원 운영	420	420	0	0	420	420	0	0
법원정책연구비	1,000	1,000	307	0	1,307	936	237	134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관련 법적 문제 연구	130	130	0	0	130	130	0	0

자료: 대법원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143-405

나. 분석의견

대법원은 법원정책연구비 연구과제를 사법정책연구 개선 사업의 고유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연구주제 중심으로 선정하고, 그 밖에 다른 연구주제의 경우 관련성이 높은 사업에 소요 예산을 편성하여 수행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2018년도에 사법정책연구 개선 사업의 법원정책연구비 내역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였다.

[2018년도 법원정책연구비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기간	제출일	수행기관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수립	120	120	0	'18.7.~ '18.11.	'18.12.17.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대법원 판결의 문체 및 논증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70	70	0	'18.3.~ '18.8.	'18.10.15.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법원등기전산정보센터(제2센터) 신축에 따른 이전 전략계획 수립 위한 기본계획 연구	40	40	0	'18.3.~ '18.6.	'18.7.16.	㈜넷아스기술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검증 연구용역	39.5	39.5	0	'18.4.~ '18.9.	'18.10.15.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이행 전략 등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39.5	39.5	0	'18.4.~ '18.9.	'18.10.15.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도서관 이전청사 열람실 구성방안 연구	26	26	0	'18.4.~ '18.6.	'18.6.18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73.4	36.7	36.7	'18.7.~ '19.1.	-	사단법인한국능률협회
등기전문화 및 등기직렬 신설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35.4	0	35.4	'18.7.~ '19.1.	'19.2.1.	사단법인한국인사행정학회

(단위: 백만원)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기간	제출일	수행기관
법원 용역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방안 연구	40	40	0	'18.3.~ '18.5.	'18.12.17.	한국노동연구원
EMP 공격에 대비한 사법정보 시스템 보호방안 연구	33	33	0	'18.8.~ '18.10.	'18.11.19.	한국전파 진흥협회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향한 헌정사적 노력과 공법적 과제	33	16.5	16.5	'18.6.~ '19.1.	'19.2.18.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전관예우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96	96	0	'18.6.~ '18.10.	'18.10.15.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35	0	35	'18.12.~ '19.6.	-	총신대산학 협력단
관리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29	0	29	'18.12.~ '19.4.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한 헌법 원칙에 관한 연구	33	0	33	'18.12.~ '19.5.	-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독일통일 이후 구재산권 회복 관련 분쟁사례 연구-독일판례의 유형별 쟁점과 해결법리를중심으로	40	27.9	12.1	'18.11.~ '19.5.	-	동아대산학 협력단
법정통역인 인증제도의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30	30	0	'18.7.~ '19.12.	'18.11.19.	이화여대산학 협력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각 행위유형, 공정거래법과의 관련성, 각국의 부정경쟁방지법 및 실무 및 관할 집중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50	25.5	24.5	'18.11.~ '19.3.	-	서울대산학 협력단
특허소송에서 전문가의 활용에 관한 연구	30	15.5	14.5	'18.11.~ '19.2.	-	충북대산학 협력단

자료: 대법원

그런데, 2018년도에 대법원이 수행한 연구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수립' 등 일부 연구과제는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할 때, 사법정책연구 개선 사업의 법원정책연구비 보다는 다른 회계(기금), 프로그램이나 단위사업에 속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판단된다.[2)]

대법원은 사법정책연구 개선 사업의 법원정책연구비와 관련하여 정책연구용역은 법원행정처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으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는 정책의 개발 및 현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조사·연구로서 정책대안을 결과물로 제시하는 조사·연구는 물론 정책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단순한 기계적·반복적 설문조사 제외)도 포함되며, 2018년도에 수행한 연구과제는 정책의 개발 및 주요 정책현안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사·연구이므로 사업목적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3)]

그러나,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사실상 사법정책연구 개선 사업의 법원정책연구비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에 제한이 없다는 것으로, 예산의 집행 상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현행 대법원 소관 사업의 예산 편성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단위사업을 평가단위로 하는 현행 재정사업 평가 체계 하에서 사업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법원정책연구비를 통한 정책연구용역 사업 연구과제를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의 고유한 목적으로서 사법제도 또는 재판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수행하고, 그 밖에 다른 연구주제의 경우 관련성이 높은 사업에 소요 예산을 편성하여 수행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4)]

---

2) 사법정책연구개선 세부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으로는 양형제도 개선지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 남북교류 및 통일 대비 관련 법적 문제 연구가 편성되어 있는 바, 이들 내역사업과도 괴리되는 측면이 있다.

3) 대법원은 법원의 사법정책연구 개선 사업의 법원정책연구의 경우 사법정책의 현안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수립'의 경우 단순한 건물에 대한 시공 등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교육시설과 같이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전제요건인 법정의 신설 및 개선, 공간에 대한 재배치 등 물적 기반의 변화와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책의 개발 및 현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사·연구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대법원은 법정중심재판운영 사업(코드: 일반회계 1143-403)에 3,000만원, 사실심충실화 사업(코드: 일반회계 1144-407)에 8,000만원의 정책연구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있다.

3 등기소 신증축 사업 간 사업비 상호 전용 등 부적절

가. 현 황

등기소 신증축 사업은 일반등기소의 신축 및 리모델링, 대도시 지역의 광역등기소 신축 등을 통하여 등기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385억 5,400만원으로, 363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5,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1,4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8회계연도 등기소 신증축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8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등기소 신증축	27,677	27,677	10,877	0	38,554	36,387	1,753	414
광역등기소	6,970	6,970	4,686	0	11,656	11,369	242	46
일반등기소 신축 및 노후 등기소 리모델링	3,654	3,654	1,139	△494	4,299	4,197	102	0
관서운영비 등	1,000	1,000	0	△47	953	952	0	1
장애인등 편의시설 보완	275	275	0	0	275	275	0	0
사법역사문화교육관	14,360	14,360	4,499	1,175	20,034	18,296	1,410	328
등기전산정보센터 신축	1,266	1,266	553	△634	1,185	1,146	0	39
등기소 관리	152	152	0	0	152	152	0	0

자료: 대법원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나. 분석의견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파주등기소 신축 사업과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신축 사업 간 사업비 상호 전용과 예산 편성은 전용의 요건을 규정하여 예산의 변경을 가급적 지양하려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고, 실제 소요와 다른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회 예산 심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등기소 신증축 사업을 통하여 파주등기소 신축 사업과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파주등기소 신축 사업 토지매입비 5억 4,100만원을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신축 사업 공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이는 전년도인 2017년도에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신축 사업 공사비 5억 4,100만원을 파주등기소 신축 사업 토지매입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데, 2018년도 예산 편성 시에 동 금액을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신축 사업 공사비로 편성하지 않고 파주등기소 신축 사업 토지매입비로 편성함에 따라 2018년도에 실제 소요에 따라 이를 환원시켜 집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7회계연도 파주등기소 및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신축 사업 결산 내역(비목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7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파주등기소 신축	1,442	1,442	109	541	2,092	953	1,139	0
건설보상비	300	300	0	541	841	841	0	0
기본설계비	0	0	15	0	15	15	0	0
실시설계비	0	0	94	0	94	94	0	0
공사비	1,127	1,127	0	0	1,127	0	1,127	0
감리비	12	12	0	0	12	0	12	0
시설부대비	3	3	0	0	3	3	0	0
사법역사문화 교육관 신축	9,070	9,070	3,557	△541	12,086	7,566	4,499	21
건설보상비	150	150	0	0	150	131	0	19
기본설계비	0	0	0	0	0	0	0	0
실시설계비	0	0	0	0	0	0	0	0
공사비	8,417	8,417	3,422	△541	11,298	7,089	4,207	2
감리비	485	485	129	0	614	324	290	0
시설부대비	18	18	7	0	25	23	2	0

자료: 대법원

[2018회계연도 파주등기소 및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신축 사업 결산 내역(비목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8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파주등기소 신축	654	654	1,139	△541	1,252	1,150	102	0
건설보상비	541	541	0	△541	0	0	0	0
기본설계비	0	0	0	0	0	0	0	0
실시설계비	0	0	0	0	0	0	0	0
공사비	100	100	1,127	0	1,227	1,136	91	0
감리비	10	10	12	0	22	13	9	0
시설부대비	3	3	0	0	3	1	2	0
사법역사문화 교육관 신축	13,360	13,360	4,499	1,175	19,034	17,381	1,410	244
건설보상비	0	0	0	0	0	0	0	0
기본설계비	0	0	0	0	0	0	0	0
실시설계비	0	0	0	0	0	0	0	0
공사비	12,809	12,809	4,207	1,122	18,138	16,485	1,410	244
감리비	526	526	290	53	869	869	0	0
시설부대비	25	25	2	0	27	27	0	0

자료: 대법원

파주등기소 신축 사업과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신축 사업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2017년도 파주등기소 신축 사업 토지매입비 추가집행액 5억 4,100만원은 연차별 투자계획 상 2018년도에 집행할 토지매입비 연부액을 앞당겨 집행한 것으로, 대법원은 분할납부에 따른 할부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까지 미리 집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1] 대법원의 전용 조치가 할부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같은 목적으로 다른 신축 사업의 공사비를 전용하여 다음연도 연부액을 앞당겨 집행하고, 다음연도에 실제 소요에 따라 이를 환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다시 전용하는 것은 전용의 요건을 규정하여 예산의 변경을 가급적 지양하려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대법원에 따르면, 1,900만원 정도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중기사업계획과 일치시킨다는 이유로 실제 소요와 다르게 5억 4,100만원을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신축 사업 공사비가 아닌 파주등기소 신축 사업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는데,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여 중기사업계획과 달리 집행한 후 다음연도 예산을 중기사업계획과 일치시킨다는 이유로 전용을 예정하고 실제 소요와 다르게 편성한 것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걸쳐 이루어진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파주등기소 신축 사업과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신축 사업 간 사업비 상호 전용 및 예산 편성은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고, 실제 소요와 다른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회 예산 심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조정 및 집행 부적절

가. 현 황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1]은 국가기관 및 민간 분야의 정형·비정형 등기정보 요청에 적시 대응하고, 국민의 기대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형과 방식의 사용자 맞춤형 등기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현액은 35억 800만원이며, 34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8회계연도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3,460	3,460	0	48	0	3,508	3,498	0	10

자료: 대법원

동 사업은 물적편성주의[2]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등기시스템이 시점별 정보로는 추출이 불가능하여 2015년 국세청의 변칙 상속·증여 차단을 위한 17만명에 대한 근저당권 및 소유권 자료 요청, 2016년 인사혁신처의 재산등록대상 공직자 22만명에 대한 소유권, 근저당권 등 부동산등기정보 요청, 2016년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격 검증 및 부정 방지를 위한 부동산등기정보와 법인등기정보 연계 요청에 부응하지 못함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 요청에 대하여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대량의 등기정보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수요에 부합하는 등기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등기특별회계 1149-504

2) 부동산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 중 하나로, 등기부에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부를 소유자로 편성하는 인적편성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나. 분석의견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관련 장비 도입 사업은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조정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 미흡에 기인한 측면이 있었으며, 사실상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시스템개발비(일반연구비) 34억 6,000만원이었으나, 대법원은 등기업무전산화 사업[3]에 편성된 임차료 4,800만원을 예산 조정(내역변경)을 통하여 확보하고,[4] 이를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임차하는데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 장비 도입 관련 예산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비목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비목	
내역 변경	등기업무 전산화 (1149-503)	210-07	48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1149-504)	210-07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 장비 도입 임차료 확보

자료: 대법원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및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과 명의인별 등기데이터 구축을 통한 등기빅데이터시스템과의 연계 요청에 대한 고려 중 국고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수행과 공직자의 등록재산의 거짓기재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정확한 심사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하여 공유하게 되었고, 대내적으로 2018년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단순히 분석 결과만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의 재구성을 통한 정보 제공 등 분석 결과를 기

3) 코드: 등기특별회계 1149-503

4)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장비 도입을 위한 임차료는 동일한 단위사업에 편성된 등기업무전산화 세부사업의 임차료를 조정하여 충당한 것으로 내역변경에 해당한다.

존 등기업무시스템에서 활용하여 테스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급하게 장비 도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도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관련 장비 도입 사업 추진을 위한 임차료 예산의 조정 및 집행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2018년도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관련 장비 도입 사업은 취득원가 8억 6,900만원, 임차기간 60개월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예산 조정의 규모는 8억 6,900만원이며, 사실상 동 금액 상당의 장비를 조달하는 사업이므로 기존 장비의 활용가능성 등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었다.

동 사업이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2018년도에 조정하여 집행한 금액은 1차년도 지급분 4,800만원으로 규모가 크지 않으나, 리스계약은 집행연도 이후 다년도에 걸쳐 구속적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사실상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대법원이 제시하는 예산조정 사유는 사실상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배경에 대한 설명과 다를 바 없으며,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장비 도입 여부나 시기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때, 2018년도 등기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임차료 예산의 조정은 집행연도 들어 발생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였던데 기인한 측면이 있다.

대법원은 2018년도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예산조정 및 집행과 같은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등특 기본경비 반복적인 운영비 조정 및 일반수용비 초과집행 부적절

가. 현 황

등특 기본경비[1]는 각급 등기과·등기소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현액은 55억 9,500만원이며, 55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9,0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8회계연도 등특 기본경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2018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인건비(110)	6	6	0	0	6	1	0	5
운영비(210)	4,829	4,829	0	0	4,829	4,797	0	32
여비(220)	98	98	0	0	98	96	0	2
업무추진비(240)	20	20	0	0	20	20	0	0
직무수행경비(250)	518	518	0	0	518	474	0	44
보전금(310)	9	9	0	0	9	3	0	6
유형자산(430)	115	115	0	0	115	115	0	1
합 계	5,595	5,595	0	0	5,595	5,505	0	90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등특 기본경비는 운영비 조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일반수용비가 큰 규모로 초과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법원은 운영비 각 항목별 집행실태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등기특별회계 1111-271

및 소요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검토를 통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등특 기본경비에서는 운영비(210목)에서 예산 조정이 다수 발생하였고, 일반수용비가 큰 규모로 초과 집행되었는데, 2016년도 이후 최근 3년간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이같은 집행 행태는 매 회계연도에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2016~2018회계연도 등특 기본경비 운영비(210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2016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수용비	183	183	0	916	1,099	1,098	0	1
공공요금및제세	686	686	0	△420	266	261	0	5
특근매식비	0	0	0	0	0	0	0	0
연료비	808	808	0	△442	366	364	0	2
시설장비유지비	195	195	0	△12	183	183	0	0
차량선박비	109	109	0	△19	90	90	0	0
복리후생비	1,803	1,803	0	△22	1,781	1,773	0	8
기타운영비	406	406	0	△2	405	404	0	0
비목	2017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수용비	622	622	0	687	1,309	1,308	0	1
공공요금및제세	686	686	0	△362	324	324	0	0
특근매식비	200	200	0	△160	40	39	0	1
유류비	917	917	0	△55	862	857	0	5
시설장비유지비	195	195	0	△46	149	149	0	0
복리후생비	1,803	1,803	0	△61	1,742	1,731	0	11
기타운영비	406	406	0	△2	404	403	0	1
비목	2018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수용비	622	622	0	608	1,230	1,228	0	2
공공요금및제세	686	686	0	△306	379	373	0	6
특근매식비	201	201	0	△38	163	159	0	4
유류비	917	917	0	△29	888	871	0	17
시설장비유지비	195	195	0	△48	147	147	0	0
복리후생비	1,803	1,803	0	△91	1,712	1,710	0	2
기타운영비	406	406	0	△96	310	309	0	1

자료: 대법원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각급 등기과·등기소에서 공공요금 및 특근매식비를 절약하여 법인인감증명 용지, 법인인감카드, 부동산등기부 용지 등의 업무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일반수용비로 조정하여 집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등특 기본경비의 운영비 예산 조정은 기본경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세목간 조정에 해당하나, 세목간 조정과 같은 예산 조정 역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가재정 운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등특 기본경비의 경우 운영비(210목)의 예산 조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일반수용비가 큰 규모로 초과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법원은 각급 등기과·등기소의 운영비 각 항목별 집행실태 및 소요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검토를 통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6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강구 필요

가. 현 황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공탁법」 제5장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서,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으로부터 출연받은 공탁금 운용수익금(이하 '공탁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다.

2018년도 계획현액은 583억 3,600만원으로, 651억 2,100만원을 집행하여 67억 8,500만원을 초과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결산(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초과집행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총 계	58,336	58,336	0	58,336	65,121	0	(6,785)	111.6
재판활동종합지원	48,397	48,397	0	48,397	45,475	0	2,922	94.0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48,303	48,303	0	48,303	45,417	0	2,886	94.0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2,935	2,935	0	2,935	2,814	0	121	95.9
소송구조지원	6,022	6,022	0	5,796	4,197	0	1,599	69.7
조정제도 지원	9,313	9,313	0	9,539	9,477	0	62	101.8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3,262	3,262	0	3,262	3,262	0	0	100
사법서비스향상	26,771	26,771	0	26,771	25,667	0	1,104	95.9
기금운영비	94	94	0	94	58	0	36	61.7
여유자금운용	9,939	9,939	0	9,939	19,646	0	(9,707)	197.7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대법원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주요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 내용
공탁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	공탁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등 정보화 사업
소송구조 지원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민사소송비용 지원
조정제도 지원	조정위원 수당, 조정센터 운영 등 조정제도 운영 지원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등 민간경상보조
사법서비스 향상	가사비송, 소년보호재판, 사회적 약자 창구 등 운영 지원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매년 발생하는 초과 수입이 주요사업에 투입되지 않고 여유자금 운용으로 편입되어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기금 주요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적정 규모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 계획(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2016년도 267.1%, 2017년도 170.6%, 2018년도 197.7%로 매년 여유자금 집행액이 계획(현)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전체 기금규모에서 여유자금 운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집행액 기준으로 2016년도 10.3%, 2017년도 18.6%, 2018년도 30.2%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
전체 기금	계획(현)액(A)	51,590	50,500	58,336
	집행액(B)	53,818	54,479	65,121
여유자금 운용	계획(현)액(C)	2,083	5,934	9,939
	집행액(D)	5,563	10,122	19,646
	집행률(D/C)	267.1	170.6	197.7
전체 기금규모 대비 여유자금 운용 비율	계획(현)액 기준(C/A)	4.0	11.8	17.0
	집행액 기준(D/B)	10.3	18.6	30.2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동 기금의 주요 수입에서 매년 발생하는 초과 수입이 기금의 주요사업비로 투입되지 않고 여유자금 운용으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 기금이 설치된 2016년도 이래 민간출연금(공탁출연금) 수입액과 정부예금 회수(여유자금 회수) 수입액이 계획(현)액을 초과하고 있지만[1], 주요사업비가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주요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
주요수입	민간출연금 (공탁출연금)	계획(현)액(A)	51,590	46,561	52,402
		수입액(B)	53,517	48,440	54,476
		집행률(B/A)	103.7	104	104
		초과수입분(B-A)	1,927	1,879	2,074
	정부예금 회수 (여유자금 회수)	계획(현)액(C)	0	3,939	5,934
		수입액(D)	0	5,563	10,122
		집행률(D/C)	0	141.2	170.6
		초과수입분(D-C)	0	1,624	4,188
	합계(초과수입분)		1,927	3,503	6,262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정부예금 회수(여유자금 회수) 계획(현)액 대비 수입액 비율이 2017년도 141.2%, 2018년도 170.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 회계연도 정부예금 회수(여유자금 회수) 계획액을 전년도의 여유자금 운용 계획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전년도 기금 결산 결과 발생한 공탁출연금 초과 수입분이 여유자금 운용 초과 집행분으로 편입되고, 동 여유자금 운용 초과 집행분이 다음연도의 정부예금 회수(여유자금 회수) 수입액 초과분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주요사업비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
전체 기금	계획(현)액(A)	51,590	50,500	58,336
	집행액(B)	53,818	54,479	65,121
주요사업비	계획(현)액(C)	49,407	44,466	48,303
	집행액(D)	48,169	44,260	45,418
	집행률(D/C)	97.5	99.5	94.0
기금규모 대비 주요 사업비 비율	계획(현)액 기준(C/A)	95.8	88.1	82.8
	집행액 기준(D/B)	89.5	81.2	69.7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금의 주요사업을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여유자금 운용이 필요하나, 여유자금은 기금 설치 목적에 따른 주요사업에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금으로 특히 사법서비스진흥기금과 같은 사업성기금에 있어서 그 규모가 과다하게 운용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회비용을 유발하게 되어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 비효율을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대법원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른 사업 영역이 소송구조나 그 밖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등 향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금 주요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적정 규모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2)]

2) 대법원은 기금 설치 4년차를 맞아 기금의 설치목적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의뢰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사업이 사법서비스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사법서비스 수요가 많은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2억 4,700만원이며, 12억 6,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를 모두 수납하였다.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8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247	1,247	1,247	1,266	1,266	-	-	101.5

자료: 헌법재판소

2018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54억 4,487만원이며, 이 중 93.8%인 426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28억 3,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8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5,445	45,445	45,445	42,608	-	2,837	93.8

자료: 헌법재판소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나.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헌법재판소의 자산은 1,504억 1,828만원, 부채는 41억 3,262만원으로 순자산은 1,462억 8,566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1억 2,315만원(0.1%)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1억 6,955만원, 일반유형자산 1,460억 783만원, 무형자산 42억 3,489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헌법재판소 증축 공사와 헌법재판연구원 공사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의 증가 15억 1,728만원에 주로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9,763만원(2.4%) 증가한 것으로 유동부채 13억 8,546만원, 장기차입부채 27억 4,716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데이터센터 장비 확충사업(2단계) 관련 신규리스 등에 따른 유동부채 1억 2,086만원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50,418	150,295	123	0.1
Ⅰ. 유동자산	170	11	159	1,445.5
Ⅱ. 투자자산	-	-	-	-
Ⅲ. 일반유형자산	146008	144,491	1,517	1.0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4,235	4,393	△158	△3.6
Ⅵ. 기타비유동자산	6	1,400	△1,394	△99.6
부 채	4,133	4,035	98	2.4
Ⅰ. 유동부채	1,385	1,265	120	9.5
Ⅱ. 장기차입부채	2,747	2,770	△23	△0.8
Ⅲ. 장기충당부채	-	-	-	-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146,286	146,260	26	0.0
Ⅰ. 기본순자산	93,090	93,090	-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2,533	△2,588	△55	2.1
Ⅲ. 순자산 조정	55,728	55,758	△30	0.1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는 469억 3,171만원이다. 비용은 프로그램순원가 469억 6,773만원, 비배분비용 7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3,608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2억 7,306만원(5.1%) 증가한 469억 3,171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22억 6,505만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	46,968	44,703	2,265	5.1
Ⅱ. 관리운영비	-	-	-	-
Ⅲ. 비배분비용	-	8	△8	△100.0
Ⅳ. 비배분수익	36	52	△16	△30.8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46,932	44,659	2,273	5.1
Ⅵ. 비교환수익 등	-	-	-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46,932	44,659	2,273	5.1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1,462억 6,013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462억 8,566만원으로 기초 대비 2,553만원(0.0%)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기초순자산이 전기 대비 5억 5,831만원 증가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전기 대비 17억 4,028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482억 5,289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2억 6,558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감가상각으로 인한 자산재평가이익의 감소 3,007만원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146,260	145,702	558	0.4
Ⅱ. 재정운영결과	46,932	44,659	2,273	5.1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6,987	45,247	1,740	3.8
Ⅳ. 조정항목	△30	△30	0	0.0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46,286	146,260	26	0.0

자료: 헌법재판소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헌법재판소의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본부기본경비**, **②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③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이 있다.

본부기본경비는 학술대회 지원금 및 참가금의 조정으로 100만원이 감액(52억 1,300만원→52억 1,200만원)되었고,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는 외부강사수당의 조정으로 700만원이 감액(7억 5,000만원→7억 4,300만원)되었으며,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은 헌법재판제도 방문강의 사업의 조정 및 지역상담실 운영 사업의 전액 삭감에 따라 3,700만원이 감액(25억 8,400만원→25억 4,700만원)되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헌법재판소는 ① 신속한 사건처리 지원, ② 창립 30주년 새로운 도약, ③ 인적·물적 역량 확충으로 미래성장 견인, ④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위상 강화를 2018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국제회의 참석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되는 주요 협력국 헌법재판기관 상호협력회의 사업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공동연구위원회 회의 사업에서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예산(현)액 대비 큰 규모의 불용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국제회의 참석 사업 사전검토 미흡에 따른 집행실적 부진 부적절

가. 현 황

국제회의 참석 사업[1]은 헌법재판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활동 및 연구사무국 운영 등을 통하여 각국 헌법재판소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현황과 성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나라와 우리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현액은 7억 500만원이며, 4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8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8회계연도 국제회의 참석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8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제회의 참석	713	713	0	△8	705	467	0	238
베니스위원회 참석	117	117	0	0	117	75	0	42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	35	35	0	0	35	26	0	9
헌법재판소간 양자교류 협력사업	42	42	0	0	42	31	0	11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총회 준비이사회	36	36	0	0	36	10	0	26
외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세미나 참석	17	17	0	0	17	19	0	△2
주요협력국 헌법재판 기관 상호협력회의	55	55	0	0	55	25	0	30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032-302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8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공동연구위원회 회의	230	230	0	△8	222	105	0	117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	101	101	0	0	101	103	0	△2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연구활동	30	30	0	0	30	27	0	3
외국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	50	50	0	0	50	46	0	4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18년도에 국제회의 참석 사업을 통하여 베니스위원회 참석,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 헌법재판소간 양자교류협력,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총회 준비이사회, 외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세미나 참석, 주요협력국 헌법재판기관 상호협력회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공동연구위원회 회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 및 연구활동 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분석의견

국제회의 참석 사업의 일부 내역사업에서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예산(현)액 대비 큰 규모의 불용이 발생하였는 바, 헌법재판소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도에 국제회의 참석 사업을 통하여 수행한 사업 중 베니스위원회 참석,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총회 준비이사회, 주요협력국 헌법재판기관 상호협력회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공동연구위원회 회의 사업에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현)액 대비 큰 규모의 불용이 발생하였다.[2)]

2) 헌법재판소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 사업, 헌법재판소간 양자교류협력 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집행잔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8년도 베니스위원회 참석 사업 등 추진실적]

사업명	당초계획	추진실적	주요 불용사유	예산액	불용액
베니스 위원회 참석	o 베니스위원회 제115차 정기 총회 참석 o 베니스위원회 제117차 정기 총회 참석 o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 위원회 회의 참석	o 베니스위원회 제114차 정기 총회 참석 o 베니스위원회 제115차 정기 총회 참석 o 베니스위원회 제117차 정기 총회 참석 o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 위원회 회의 참석	베니스위원회 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퇴임 후 후임 대리위원 미지정에 따른 대리위원 불참	117	42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 총회 준비이사회	o AACC 제4차 총회 참석 o AACC 연수 및 인적자원개발 센터 하계연수 참석 o AACC 행정 사무국 쇼트코스 참석	o AACC 연수 및 인적자원력개발 센터 하계연수 참석 o AACC 행정 사무국 쇼트코스 참석	주최국 (말레이시아) 정권 교체 및 연방법원장 교체 등으로 제4차 총회·이사회 연기	36	26
주요협력국 헌법재판 기관 상호 협력회의	o 헌법재판기관 등의 주요 인사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2회 실시)	o 스페인 헌법재판소 초청 강연회 개최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개최로 세미나 1회 미실시	55	30
아시아헌법 재판소연합 공동연구 위원회 회의	o AACC 연구 사무국 재판관 국제회의 및 연구관 국제회의 개최	o AACC 연구사무국 제1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최	2018년도부터 아시아헌법 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의 재판관·연구관급 국제회의를 격년제로 번갈아 연 1회 개최하기로 방침을 변경	222	117

자료: 헌법재판소

베니스위원회 참석 사업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총회 준비이사회 사업의 집행 부진은 참석 예정자의 사임과 후임자 임명 지연,[3] 개최국의 정치적 상황 변동[4]에 기인한 것으로 집행연도 들어 발생한 사정 변경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협력국 헌법재판기관 상호협력회의 사업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공동연구위원회 회의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예산(현)액 대비 큰 규모의 불용이 발생한 사례로 판단된다.

주요협력국 헌법재판기관 상호협력회의 사업의 경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당초 2회 예정되어 있던 상호협력회의를 1회만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헌법재판기관 등 주요인사 초청과 세미나 등 행사 개최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회의 개최 회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공동연구위원회 회의 사업의 경우 사후 내부 검토과정에서 재판관 국제회의와 연구관 국제회의의 연도별 개최 주기를 변경함에 따라 재판관 국제회의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던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출범 초기 상황에서 실효성있는 국제회의 개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5] 국제회의의 연도별 개최 주기와 같은 사업 수행의 기본적인 범위나 방침에 관한 사항은 예산(안) 편성 및 심의·확정 당시 검토하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향후 국제회의 참석 사업[6]을 수행하는 경우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3) 베니스위원회 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퇴임 이후 사무차장직 공석 상황이 지속되어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업무공백 우려 및 재판부 교체 등으로 인하여 대리위원이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베니스위원회에 대리위원이 한차례도 참석하지 못하였다.

4)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AACC 회원기관으로서 AACC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제4차 총회·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말레이시아의 정권 교체 및 연방법원장 교체로 제4차 총회·이사회가 2019년으로 연기되었다.

5) 헌법재판소는 연구사무국 유치과정에서 재판관·연구관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회의 연례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재판관위원회 회원 지명 요청에 대하여 3개 기관만 회신하는(2016년 카자흐스탄 및 필리핀 회신, 2017년 키르기즈스탄 회신) 등 회원기관이 담당 재판관 지명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형식적인 회의 개최보다 연구사무국의 자체 연구·조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회의를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검토 과정을 거쳐 재판관급 회의와 연구관급 회의를 각 2년 주기로 개최하기로 방침을 변경한데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상황적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6) '국제회의 참석' 세부사업은 2019년도부터 '국제교류'로 사업 명칭이 변경되었고, '국제회의 참석' 사업의 내역사업 중 '외국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 사업은 '재판자료 확충' 세부사업으로 이관되었다.

집 필

총 괄 | 김일권 예산분석실장

심 의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정승환 예산분석총괄과장
공춘택 산업예산분석과장
이동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신은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신봉진 예산분석관
정주완 예산분석관
민성철 예산분석관
박은형 예산분석관

지 원 | 이정아 행정실무원

결산분석시리즈 Ⅱ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9년 8월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태영특수프린테크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180-6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9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0722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1471-10